

청소년보호법 폐지 및 대체 입법화 운동과
표현의 자유 수호 캠페인 !!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당사자를 사회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규제와 통제 중심의 정책으로서 청소년 인권과 복지·교육권의 보호로까지 확대되는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 하에 과도하게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대중문화예술계의 환경(창작/유통/소비/담론)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어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정책에 대한 기준 틀이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문화연대는 '청소년보호법 폐지 및 대체 입법화 운동과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문화연대 홈페이지에서 청소년의 진정한 인권·문화권·교육권 확립과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 www.cncc.or.kr "

폐지! 청소년보호법 해체!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의 인권과 교육·문화권 신장을 위한

'청소년진흥법'으로 대체 입법하라!!

'사법부의 보수적인 문화검열 중단! 문화표현의 자유 수호!'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무엇이 문제인가

일 시 : 2000년 9월 15일 금요일 오후 3시
장 소 :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
주 관 :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공동주최 :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영화인회의,
한국대중음악작가연대, 한국만화가협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우리만화 발전을 위한 연대모임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무엇이 문제인가

청소년보호법 폐지 및 대체 입법화 운동과
표현의 자유 수호 캠페인 !!

청소년 보호법 폐지 및 대체 입법화 운동

대안문화운동 참여부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당사자를 사회적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규제와 통제 중심의 정책으로서 청소년 인권과 복지·교육권의 보호로까지 확대되는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 하에 과도하게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대중문화예술계의 환경(창작/유통/소비/담론)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어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정책에 대한 기존 틀이 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문화연대는 ‘청소년보호법 폐지 및 대체 입법화 운동과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문화연대 홈페이지에서 청소년의 진정한 인권·문화권·교육권 확립과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 **www.cnqr.or.kr** ”

폐지! 청소년보호법 해체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의 인권과 교육·문화권 신장을 위한

‘청소년진흥법’으로 대체 입법하라!!

사법부의 보수적인 문화검열 중단!! 문화표현의 자유 수호!!

■ 프로그램 ■

3:00 ~ 3:10 등록

전체사회 : 원용진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3:10 ~ 4:10 발제

제 1발제 : 영화진흥법 개정(안)과 함께 기로에 선 '표현의 자유'
/ 심광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제 2발제 : 청소년보호와 음란물의 이분법을 넘어서
/ 이동연 (문화연대 청소년문화위원장)

4:10 ~ 4:20 Coffee Break

4:20 ~ 6:00 종합토론

토론자 : 유지나 (동국대 영화학과 교수)

- ✓ 이재현 (문화평론가, 전주대 객원교수)
 - ✓ 김주정 (만화가, 한국만화가협회 회장)
 - ✓ 이성욱 (문화평론가, 성공회대 강사)
 - ✓ 최윤진 (중앙대 청소년학과 교수)
 - ✓ 박종웅 (국회의원, 한나라당)
- 조광희 (변호사, 문화연대 자문변호사)

영화진흥법 개정(안)과 함께 기로에 선 '표현의 자유'

심광현 /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교수

1.

올해 초, 영화 <거짓말>에 대한 음대협의 고발조치로 보수적 시민단체들과 문화계가 한차례 격론을 벌인 바 있었다. 당시 음란성 시비는 경찰의 매매춘단속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던 시기에 불이 붙었는데, 주된 고발 이유는 19세 이상 관람가를 받았지만 청소년의 영화관 출입을 막을 수 없는 현실에서 이 영화가 공개상영되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이유였다. 이어 영화 <춘향뎐>의 경우는 16세 여성연기가 가슴 부위를 노출하고 정사장면을 아슬아슬하게 연기했다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하여 다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다행이 <춘향뎐>에 대한 고발 조치는 없었고, <거짓말>의 경우도 이후 검찰의 무혐의 처분 조치로 사태가 수습되면서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를 둘러싼 논쟁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7월에 들어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일원화 문제가 재점으로 부각되면서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고 3년간 기소상태로 방치되던 만화 <천국의 신화>가 갑자기 청소년 보호법의 전신인 미성년자보호법에 의거 300만원 벌금형을 받게 되자, 만화계는 법적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문화적 표현물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원칙이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크게 반발하면서, 문화예술계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공대위를 구성 연대투쟁에 나섰다.

이전에도 종종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지만 금년 들어 전개된 일련의 사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과거와는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 우선 이전에는 주로 문학작품이 문제시되었지만 금년에는 시각영상물이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사전심의제도의 변화가 놓여 있다. 이전에는 사전검열 기구인 공윤/공진협에 의해 문제가 되는 작품은 사전 삭제를 해야 하거나 상영불가가 되었기에 공개된 영상물이 음란물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 자체가 사전에 배제되었다. 그러나 사전검열제도가 위헌판정을 받자 99년부터 등급분류제도가 시행되면서

사전검열기능이 약화되어(물론 등급보류라는 방식으로 잔존하고 있지만) 영상물을 둘러싼 음란성 시비가 사후 고발이라는 방식으로 일기 시작하고 있다. 이는 문학작품에 대한 사전심의제도가 없어지자 형사고발이 뒤따랐던 경우와 유사하다. 2) 사전 검열이라는 여과장치가 약화되자 청소년보호법이라는 새로운 규제장치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하고 있고, 이 법을 근거로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음대협이라는 시민단체가 조직적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활동은 한편으로는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보다 큰 권력을 갖는 독립적인 단일기구로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관습과 성도덕을 일종의 시민운동 차원에서 확산시키고자 노력하는 움직임의 상호보완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사전검열이 약화됨에 따라 사후에 음란성 시비가 일게 되어 최종 판단이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지고, 사법부가 그 판단 근거로 청소년보호법에 의존해야 할 경우,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1) 우선 허구적 표현물에 대한 음란성 시비라는 까다로운 미학적 해석을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전문가가 아닌 사법부가 판정을 내릴 경우, 그 판정기준이 모호하고 그릇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농후해지며, 따라서 사법부의 짐이 그 어느 경우보다 무거워진다는 점이다. 또 이럴 경우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사법부가 최종판단을 할 경우 음란물에 대한 사법적 정의를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지 않고서는 특정 방향의 윤리적 기준에 따라 자의적 판단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사례와 정황에 따라 일관성을 결여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케 하거나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2) 또한 영상물등급위나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일정 연령 이상의 관람 및 독서가 가능하다고 등급 판정을 내린 작품에 대해 사법부가 음란물 판정을 내릴 경우 두 기관의 판단 불일치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인가가 문제로 남게 된다. 사법부의 판결이 일관성을 가지려면 음란물 판정을 받은 작품에 대해 관람가나 독서가능 판정을 내린 등급위나 간행물윤리위원회 역시 작가나 제작자 및 유통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적, 행정적 처분을 받아야 하는데, 그럴 경우 이런 기구의 책임있는 운영은 불가능해진다. 반대로 책임이 면제된다면, 등급분류 기구는 청보법을 위배하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점에서 법적 형평성이 깨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영화 <거짓말>과 만화 <천국의 신화>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일관성이 결여되었

다는 여론은 1)의 문제와 연관되며, 간행물윤리위원회가 '납본필' 결정을 내린 작품을 벌금형에 가했을 경우 2)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사태가 이렇게 전개될 경우 작가와 제작자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기관과 사법기관은 서로 책임전가에 급급하게 되고, 관객과 독자들의 경우는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추어야 할지 일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왜 이런 혼란스러운 소극이 발생하는 것일까? 단적으로 말해 과거의 악습을 폐지하고 개혁적으로 입법된 영화진흥법에 의해 서는 더 이상 영상물에 대한 규제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지자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다른 법으로라도 이를 규제해보자는 구태의연한 발상이 집요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발생하는 논리적 모순과 법적 형평성과 일관성의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가 뒤따르게 된다.

이런 문제에 봉착해서인지 금년 8월 11일 문화관광부는 사법부로 공을 넘길 경우보다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는지 사법적 판단에 해당하는 부분을 등급분류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당해 영화가 다른 법령에 저촉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영등급을 분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영화인회 의를 비롯한 영화관련 제단체들은 이는 결과적으로 말만 바꾸었지 등급보류 조항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며, 등급보류위원회에게 사법적 판단까지 위임한다는 것으로 결국 검열기능을 강화, 부활시키는 위험적인 방향으로의 개악이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나아가 그동안 영화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등급외전용관> 설치요구를 <제한상영관>이라는 용어로 바꾸고, "성과 폭력의 묘사가 과도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영화"를 <제한상영>될 영화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 18세 이상 등급가와 제한상영될 영화 사이의 구분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성인물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이래 영화진흥법과 청소년보호법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자 이제는 영화진흥법을 청소년보호법의 아래에 종속시키겠다는 셈이며, 결국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려던 애초의 문화정책을 스스로 거두게 되는 셈이다. '문화의 세기'에 과거보다 한걸음 더 전진해도 아쉬운 마당에 역으로 왜 이와 같은 뒤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2.

지난 8월 3일 문광부 장관은 방송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도가 지나쳐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장관직을 걸고” 이를 시정하겠다고 말해 방송위원회에 대한 월권 시비에 휘말린 적이 있었다. 우리 방송문화가 시청률 경쟁에 매몰되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은 물론 뉴스 보도에서까지 선정성과 폭력성이 난무하게 된 게 어제 오늘이 아닌 만큼 주무장관이 팔을 걷고 나선 것도 어찌 보면 때늦은 일이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방송이 왜곡되어 온 데에는 그동안 우리 방송계가 비전문적인 정치논리에 휘둘려왔다는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진단이 방송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시청률 경쟁이라는 근시안적 사고에서 벗어나려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방송문화의 흐름을 고쳐가려는 전문적인 지식과 전망을 가진 전문인력들이 방송정책을 이끌어야 하나, 전문성에 입각한 자율적 정책입안이 정치논리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왜곡된 방송문화를 균형하기 위해 장관직을 걸려면 드라마나 오락에서 선정적인 장면 몇 개를 걸어내는 일보다는 방송계의 인사와 정책이 비전문적인 정치논리에서 벗어나 방송계 내부에서 자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그 근본 구조를 개선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박지원 장관의 발언이 이와 같은 구조개혁에 역점을 둔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오히려 선정성과 폭력성을 빌미로 방송위원회와 방송사의 자율성에 개입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7-8월에 걸쳐 사법부와 문광부가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정책을 후퇴시키는 조처를 취하게 된 것도 이와 같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은 것 같다. 방송에 나타난 선정성과 폭력성을 억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할 명분이 없고, 또 시급하게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전문인들로 구성된 방송위원회와 방송사, 그리고 시청자의 몫이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개입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다만 장관에게는 방송위원회를 감독할 권한이 있으므로 방송위원회로 하여금 이 문제를 시정할 개선안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때이다. 이 점을 혼동하게 되면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문화정책과의 차별성이 사라지게 된다. 오늘날 청소년 문제가 크게 악화되었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과 어떤 것을 그것의 유일한 해결방식이라고 주장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방송의 선정성 문제의 존재를 지적하는 것과 그것의 해결을 장관이 주도한다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청소년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도 유사한 지적이 가능하다.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보호위원회라는 현행의 법제가 유일하고도 최선의 해결책인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논쟁이 필요하다. 최근 영상문화정책과 청소년 보호정책을 둘러싸고 빛어지는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혼란 바로 이런 지점에 대한 인식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이런 온션을 방치할 경우 “목욕물 간다고 아이까지 버리는” 오류가 야기될 우려가 크다.

오늘날 도덕적 타락의 주범이 ‘문화의 시대’라는 90년대의 사회적 풍토와 저질 문화산업의 만연에 있으므로 청소년을 저질 퇴폐문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시급히 필요한 것이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규제하자는 주장이 바로 그런 경우라 하겠다¹⁾.

1) “문화시대”라는 말은 1970년대의 산업화와 80년대의 민주화 노력을 토대로 해서 90년대에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열린 새로운 시대를 지칭하는 말인 듯 하다... 가난하고 어둡던 시대가 지나가고 삶의 여유를 바탕으로 각종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그러나 과연 문화 시대의 도래에는 기뻐할 일만이 있는 것일까?...문제는 문화산업이 팽창한다고 해서 반드시 문화가 발전하고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오히려 홍수가 나면 물이 흐리듯이 문화의 홍수 속에 수준의 향상은커녕 문화적 환경만 자꾸 혼탁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향락산업이 엄청나게 번창하고 향락문화가 빨리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라는 지적이 그렇다. 그 한 증거는 실제로 작년 한해동안 공식집계로만 해도 약 4조원의 돈이 향락산업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렇듯 약간의 여유가 돌자 어느 새 분수를 모르는 과소비와 사치풍조가 만연하여 그간 근면과 절약의 피와땀으로 쌓아온 공든 탑을 잠시만에 기초부터 흔들어 놓는 격이 되었다. 여유와 문화생활도 대개는 비생산적이고 심지어는 퇴폐적인 성향마저 짙어 도덕이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현재의 위기는 이미 이러한 풍조 속에서 예비되고 있었던 것이다....이제는 초등학생들조차 스스로 매매춘에 나서는 형편이 되었다. 이와 아울러 날로 늘어나는 저질적 문화산업에 의한 문화환경의 오염은 매우 심각하다.”(<영화 <거짓말 사태>와 성숙한 시민문화의 역할>, 2000년 2월 10일, 문화개혁시민연대 토론회 자료집 중 음대협 정책위원장 신국원씨의 발제, 15-16쪽)

“예술은 살지 몰라도 결국은 윤리가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 평범한 시민들의 미 풍양속을 지킬 권리의 보호는 뒷전으로 하고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의 소리만을 귀담아 듣는 것은 옳지 않다. 전통적 삶의 가치와 규범을 지키는 것은 잘못된 틀과 유산을 정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과학자가 윤리적 책임이 있고 철학자가 윤리적 책임이 있다면 예술가도 윤리적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무엇보다

소비자본주의가 만연하게 된 90년대의 부정적 단면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으로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얘기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들을 야기시킨 주범이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따지는 대목에서 혼선과 오류가 발생한다는 게 문제다. 우선 향락산업의 증대, 청소년 매매춘의 확대가 주요 문제로 지적되었는데, 그 원인을 지적하는 데에서는 문화산업, 저질문화산업, 대중문화, 예술의 개념들이 뚜렷한 구별 없이 마구잡이로 등장하고 있다. 영상물이 실제 행위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영상물이 어떤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심지어는 주된 동기나 원인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이런 점들을 구별하지 않은 채 무차별적인 논리에 따르면, 청소년 매매춘과 향락산업의 증대로 도덕이 붕괴되고 사회의 기초가 마비되므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되는 영상물은 형사처벌되어야 하며, 예술작품 역시 도덕이 붕괴하는데 직간접의 영향을 끼치면서도 윤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나아가 “홍수의 논리”에 따르면 문화적 오염을 줄이려면 강력한 댐과 같은 홍수조절장치가 있어야 하며, 오늘날 청소년보호법이 바로 그 조절장치가 된다는 얘기로 발전하기 쉽다. 그렇다면 민주화는 사회를 혼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강력한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며 등장했던 군사독재의 논리와 다를게 무엇인가? 물론 ‘문화’라는 아이를 통채로 버리면 목욕물을 갈 필요도 없으니 목욕을 시켜야 할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편리한 해결책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진정으로 옳은 해결책이라면 민주적 시민사회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동안 대중문화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비판은 진보적인 좌파지식인들에 의해, 고급문화의 옹호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은 문자 그대로

염려되는 사항은 지금은 무산되었으나 과연 무난하게 생각되었던 입법예고의 내용들이 그대로 시행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우려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 처음에는 법대로 지켜진다 하더라도 차음 감독이 허술해지고 규제도 결국 실용적으로 풀리는 것이 아닌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 보호법을 비롯해서 온갖 법제도가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지하철에 가보라. 전시할 수 없는 신문, 잡지가 버젓이 그것도 가장 잘 보이게 나열되어 있는 실정이다. 심야극장이 청소년의 무대요, 비디오방의 문제 등 이루 나열할 수 없는 실제 상황이 우려를 금할 수 없게 한다. 시민들의 의식도 우려가 된다. 전용관이 없더라도 이미 음란 비디오물이 판치고 그것도 O양 비디오의 경우처럼 불법적인 것일수록 더욱 열을 올리는 상황이 우려의 근거이다”(같은 글, 20-21쪽)

‘담론적 차원에서의 비판’이었고, 창작자나 수용자의 이성적 판단에 호소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80년대에 들어 60-70년대의 진보적인 흐름이 사회적으로 퇴조하자, 보수적인 종교단체가 대중문화나 예술에서 나타나는 성적 표현을 외설음란물로 규정하면서 형사 처벌이나 정책적인 지원 거부를 해야 한다며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하면서 ‘문화전쟁’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바 있다(1976년부터 미국에서 반포르노운동을 전개한 데이빗 월드먼이 대표적인 경우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89-91년에 걸쳐 로버트 메이플스로프의 사진전시와 앙드레 세리노의 사진전시에 대한 NEA의 지원 타당성을 둘러싸고 수백회에 걸친 지상논쟁이 벌어져 후에 이를 묶어 ‘문화전쟁’이라는 제목의 백서가 발간되기도 했다(그 결과 공화당 정부가 NEA 기금을 대폭 삭감하기도 할만큼 정책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결성되어 조직적인 문제제기 집단으로 활동해온 음대협은 그러나 영화 <거짓말>을 고발한 것이 ‘문화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문화산업, 수용자, 그리고 개혁운동의 삼자의 역학관계로 나타나는 대중문화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은 학교, 종교단체, 가정에서 뿐 아니라 사회정책을 둘러싼 대규모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를 가리켜 ‘문화전쟁’이라고 부른다. 물론 이번 음대협이 제기한 문제는 문화전쟁보다는 논의와 대화를 지향한다. 반문화 또는 문화배격주의를 펴려는 것은 더욱 아니다. 이 운동은 특정 종교의 윤리를 억지로 강요하려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신세대와 선세대를 나누거나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 대립시키는 담론은 지양되어야 한다. 모든 문화담론은 대화를 위한 공적 담론을 지향해야 한다.”(같은 글, 26쪽)

하지만 지난 번 토론회에서는 “대화를 위한 공적 담론을 지향해야 한다”며 “뒤늦은 감이 있으나 이런 논의의 장이 열렸다는 것에 대해 그나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던 음대협 측에서 이번 토론회에는 참여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은 유감스럽기도 하거니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 하기는 음대협은 지난 2월 10일 문화연대와의 합동토론회 이후 향후 시민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자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거짓말>이 무혐의 처리되자 유엔 인권위에 다시 제소하는 등 대화보다는

사법적 처리에 주력해 왔다. 왜 이와 같은 모순적인 행동이 빚어지는 것일까? 차라리 '저질 대중문화'와 '퇴폐적인 영상문화'에 대한 '문화전쟁'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매매춘과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앞장서 활동한 김양자 서장의 행동에는 언행일치가 있다. 그러나 음대협이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문화전쟁'을 선포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모양이다. 석연치 않은 그점이 무엇일까? 실제로 데이빗 월드먼과 같이 일관성 있게 '문화전쟁'을 선포하려면 자본주의 문화 자체를 긍정적으로 비판하고 이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면서, 현대사회의 문화적 타락을 극복하기 위해 청교도적인 윤리를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명백해 보이는 바로 이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일 것이다. 현대의 자본주의 생활양식 자체를 부정해야 하고, 전근대적인 청교도적 윤리로의 복귀를 전면적으로 주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용기가 없을 경우 문제의 근원을 치기보다는 파생적인 현상을 문제삼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외설적인 표현이 눈에 띠는 몇몇 영상물을 치기로 작정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이럴 경우 노력에 비해 홍보효과가 크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 문제의 주된 내용은 학생들이 대중문화에 열광한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만연한 학교폭력, 입시경쟁의 과열로 인한 교실 붕괴, 원조교제를 축으로 한 청소년 매매춘의 확대 등에 있다. 물론 대중문화가 일정하게 이와 같은 문제들의 확산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대중문화가 그 주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객전도이자 견강부회가 아닐 수 없다. 백보 양보해서 음란외설물이 주된 문제라고 한다면 영화 <거짓말>보다는 <쇼킹 아시아>와 같은 문자 그대로 순전히 상업적인 목적을 위한 저질 외설물이 문제이며, 청계천에 불법복제로 나돌고 있는 외국산 포르노물의 유통을 단속하고, 비디오방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포르노물을 단속하는 데 주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음대협이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여왔는지는 정말 의문이다. 97년 7월에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활동을 전개한 이후에도 학교폭력과 교실붕괴현상은 더욱 확대되었고, 청소년 매매춘도 급속히 증가했다. 이는 청소년보호법이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실속이 없으며, 청소년 문제가 그와 같은 규제와 통제장치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반증하는 사례이다. 사실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음대협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는 있겠으나 자신들의 주장과 입장

으로 인해 이 모든 책임을 대중문화의 허구적 표현물에 전가하고 싶은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는 애당초 정조준이 되지 않은 총을 가지고 목표물을 사격하는 격에 다름 아니며, 이런 식의 오조준 사격은 번번히 실패하기 마련이다. 영화 <거짓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물론 <천국의 신화>처럼 아예 조준사격을 포기하고 소위 '조닝 사격'을 해서 '운좋게' 때려 맞추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문자 그대로 운이 좋을 때나 가능한 일이다.

3.

문화부가 최근 궁색한 방법으로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등급위에 사법적 판단을 부여하는 등 위헌적인 소지를 안고 있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어, 그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청보위의 입장을 영화진흥법에 반영하려는 이유는 그 만큼 청소년 문제가 현실적으로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총리실 산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문광부 산하의 청소년위원회라는 이원적 구조를 어느 한쪽으로 흡수통일하려는 부처간의 혼계모니 싸움에서 그때그때 힘겨루기의 양상에 따라 결과는 또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처간 힘겨루기로 소모전을 벌리는 중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영화진흥법이 후퇴하는 동안, 청소년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악화되어가고 있다. 애당초 정부기구든 음대협이든 주된 초점은 말 그대로 "청소년보호"에 있는 만큼 이제는 더 이상 소모전을 벌이기보다 진짜 문제해결에 지혜와 노력을 결집시켜야 할 때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계속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지난 번 토론회에서 강내희 교수가 지적했듯이 음란외설물이라고 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로부터 예외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다만 성인이라 하더라도 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음란외설물을 공공적으로 유통시키지 않도록 할 필요는 있다. 헌법의 다른 조항에서 말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가능성이란 바로 이런 한도 내에서 가능한 것이지, 무소불위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도 좋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성인영화전용관>(또는 <등급외전용관>)이 이래서 필요한 것이다. 다만 누누히 주장해 왔듯이 이 경우는 광고를 규제하고 지역적으로 제한된 곳에 설치도록 하며, 미성년

자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실제적인 강간이나 물리적 폭력을 동반하는 성행위를 연출케 하거나 미성년자를 성행위에 등장시키는 포르노그라피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시 영업을 정지시키는 등 엄격한 사회적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더 심각하게 문제시되는 매매춘의 경우도 “매춘과의 전쟁” 운운하면서도 실제로는 제한된 구역에 한해서 영업을 허가하고 광고를 규제하며, 미성년자의 출입과 성병에 대한 정기검진 등을 통해 엄격히 단속하는 방식으로 운영도록 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성인영화전용관이 설치되면 큰 일 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너무도 앞뒤가 맞지 않고 법적으로도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국민정서’를 운운하며 음란외설물에 대해 너무도 명백히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성에 대해, 음란성에 대해 철저하게 이중규범적인 태도가 만연하는데서 기인하는 것 같다.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의 성적 자유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여성의 성적 자유는 철저히 제한하며, 실제적인 매매춘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도 포르노그라피에 대해서는 철저히 금지하려는 이중규범이 만연해 있다. 이런 이중규범이 고쳐지지 않는 한 법 시행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으며, 아무리 법을 강화하고 단속을 강화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매매춘이나 포르노그라피를 근절하기는 커녕,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는데에 급급함으로써 사실상으로는 매매춘과 포르노그라피를 ‘은폐’하고 실제로는 음성적으로 양산케하는 역설적인 효과를 야기할 뿐이다.

<매매춘의 역사>라는 책에서 번 벌로와 보니 벌로라는 공동저자들은 매춘 문제에 대해 역사적으로 실천 가능한 4가지 사회적 해결책을 검토하면서, 사실상 어떤 방식으로 규제하든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므로 차라리 이를 허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 4가지 길은 다음과 같다. 1) 매춘을 완전히 비합법화하는 길이 있는데, 이는 어차피 실패할 운명으로 기껏해야 경찰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이 경우도 단속경찰을 늘려야 하고 다시 단속경찰을 단속하는 식의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므로 비현실적이라고 본다.²⁾ 2)

2) 사실상 이제까지 법률에 의해서 매춘이 단절된 예는 없으며, 오히려 법률은 매춘을 새로운 형태로 변모시켜 왔을 뿐이다. 오히려 그것은 가창과 같은 적나라한 형태의 매춘을 부추길 뿐이며, 도리어 매춘을 은폐시킬 가능성도 있다(그러나 이런 상태를 매춘 그 자체가 사라졌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실제로 공창제도가 처음으로 일제에 의해 1900년에 이땅에 도입되었다가 1948년 미군정에 의해 공창제도가 폐지되면서 동시에 사창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매춘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었었다.

(1)의 방법이 너무 비현실적이므로 노골적인 호객행위만을 위법으로 간주함으로써 <매춘>을 재정의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경우 호객행위의 기준이 사람에 따라 다르며, 단속할 경우 미끼수사를 해야 하므로 결국에는 경찰에게 너무 과도한 권력을 부여하게 되며, 기껏해야 거리의 창녀만을 단속할 뿐 몰래 일하는 다수의 콜걸이나 고급창녀는 손을 댈 수 없어 계급적 불평등을 확산할 뿐이라고 본다. (3) 다른 방법은 일종의 <공창>제도로서 합법화하는 것이며 이것은 성병의 만연화를 저지하는 최선의 방책으로 선호되어 왔다. 그러나 확실한 효과를 거두려면 성병진단을 받은 사람의 성생활을 추적조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매춘을 일시적인 대기직업으로 간주하던 여자들도 일단 등록되면 딱지를 뗄 수 없게 되는 부조리가 나타나며, 매춘부가 지역 밖에서 장사를 할 경우를 위해 비공인 지역도 순찰을 해야하고, 지역을 설정하면 포르노산업, 파렴치범죄, 기타 풍속영업 등이 그 지역으로 집중되어 특수한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본다. (4) 결국 명백한 해결방법은 성인이 서로 합의하여 하는 성행위를 금전수수에 관계없이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매춘광고는 이른바 지하출판물에 게재하며, 전화서비스제도를 확립하고, 마시지시술소나 성인잡지를 취급하는 서점, 특수한 에스코트 서비스, 평크 카바레 등의 방법으로 손님을 모으게 한다. 만일 일반 시민이 호객행위로 사생활을 침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순찰관이 쌍방에게 보다 조심스럽게 행동하도록 충고하는 런던 방식을 택하면 된다. 이 경우 청소년 문제는 연령이나 강간에 관한 법률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강제매춘의 전면적 금지도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³⁾. 물론 저자들이 매춘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저자들은 사회가 표면적으로 매춘을 비난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이를 묵인하고, 기껏해야 투옥, 별금, 기타 형벌의 방법으로 매춘부를 법적으로 괴롭히기는 했지만, 실제로 처벌을 한 것은 가끔 있는 일이며, 그것도 가장 곤란한 처지에 있는 가난한 매춘부를 주로 단속하는 식의 비합리적이고도 불평등한 방식이므로 이제는 이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⁴⁾.

그러나 49년말 신문기사에서는 “없어지기는커녕 늘어만 가는 사창”이라는 결론을 내릴 정였고,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매춘은 더욱 늘어나 53년 3월 28일자 동아일보는 “국민보건에 일대 의협, 전국 매춘부 5만명 둘파, 보균자 30%”라는 기사를 실고 있다(손정목 지음, <일제강점기의 도시사회상연구>, 일지사, 1996, 514쪽 참조). 현재도 사정은 비슷하다고 본다.

3) 번 벌로와 보니 벌로 지음/서석연, 박종만 옮김, <매춘의 역사>, 도서출판 까치, 1992. 470-474쪽 참조.

포르노그라피가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데에도 매춘과는 경우가 다르지만 역시 이중규범이 작용해 왔다. 포르노그라피의 개념은 역사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언제나 충돌과 변화를 수반하며 하나의 통제적 범주로 발전했다. 통제의 범주로서 포르노그라피는 문화의 민주화에 대한 위협을 인식하게 되자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발명된 것이다. “지난 수백년동안 쓰고 인쇄한 모든 자료들은 의심할 바 없이 사회 지도층을 구성했던 소수 집단에 대체로 한정되어 있었다”⁵⁾. 또한 인류학자이자 철학자인 조르쥬 바파이유가 지적하듯이 “지배계급은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웠다. 성에너지로부터 그 계급은 원칙적으로 패거리들(한량들)에 필적할 만한 비율로 자유를 활용했다. 초기의 미국문명은 그 문명을 단독으로 일으켜 세운 부르주아 계급이 거의 한가로운 시간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상기원칙을 벗어났지만 오늘날 미국의 부르주아 계급은 계급적 특권을 누린다...장시간에 걸친 성희는 상류계층에 해당한다...거침없이 개방된 성은 노동력을 감소시키는 반면, 노동은 성적 충동을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노동과 성생활은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다.”⁶⁾

역사적으로 볼 때 성인들의 성생활과 성적 표현에 대한 규제는 철저하게 성적, 계급적 불평등에 기초한 이중규범의 산물이었던 만큼 해당 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그 규제가 완화되어 왔었다. 이런 역사적 흐름은 이제 우리 사회에도 마땅히 적용되어야 한다. 물론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문화전쟁’을 불사하더라도 전통적인 이중규범을 고수하고자 할 것이나, 문화적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강제적 폭력에 의한 성적 관계가 아닌 한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른 성인들의 자유로운 성행위와 성적 표현 및 수용행위는 누구도 이를 규제할 정당한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하다. 물론 해당 사회의 미풍양속을 운운하며 포르노그라피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4) 물론 매춘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회적 문제로부터 유래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지참금, 학력, 연령과 같은 결혼에 대한 장애물이 있는 사회에서는 그 같은 장애물이 없는 사회에 비해서 매춘 발생률이 높다. 너무나 많은 자격이 요구되면 신랑과 신부 후보자는 결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이혼이 어려운 경우도 매춘과 내연의 관계가 늘어난다...이성이 생계를 꾸려갈 길이 거의 없든가, 전혀 없는 사회에서는 독신여성은 때때로 매춘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쉽게 이혼할 수 있고 여성도 결혼 이외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에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매춘발생률이 낮다”(같은 책, 468쪽). 따라서 매춘을 억제하고자 한다면 “매춘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식의 전시효과 위주의 ‘선정적인 정책’보다는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복지정책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5) 린 헨트 지음/조한옥 옮김, <포르노그라피의 발명>, 책세상, 1996. 15쪽.

6) 조르쥬 바파이유 지음/조한경 옮김, <에로티즘>, 민음사, 1989. 180-181쪽.

탓에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미풍양 속 역시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인 만큼 전근대적이며 파시즘적인 시대에 통용되었던 미풍양속을 민주화 시대에 억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를 고집할 경우 이는 성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따라서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르더라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위해 특별히 사회적으로 관리되는 포르노그라피의 허용이 민주주의와 문화 발전에 저해된다는 점이 입증된 바는 없다. 오히려 포르노그라피의 양성화를 통해 포르노그라피를 둘러싼 ‘신비화’ 효과를 차단할 필요가 있고, 성적 에너지의 비억압적이고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표현을 허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만연된 관음증적인 시각을 교정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포르노그라피를 허용함으로써 성의 상품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만일 ‘상품화’ 자체가 문제라면 ‘성의 상품화’만이 문제가 아니라 노동과 지식의 상품화, 감수성의 상품화, 예술의 상품화 등도 문제이다. 모든 것이 상품화된 오늘의 상품사회에서 문제는 상품화 자체를 원론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상품화에 내재된 자유로운 교환이라는 탈영토화적인 긍정적 계기를 통해 상품화에 내재된 부정적 측면인 재영토화하려는 소유권 중심주의를 넘어서려는 다른 노력이다. 이런 점에서 음란외설 시비 논쟁은 더 이상 체면치례식의 논의로 그쳐서는 안되며, 우리 사회에서 문화의 민주화의 척도를 재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 계기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때 성숙한 시민사회로의 전환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본다.

5.

결론적으로 보면 청소년보호 문제와 표현의 자유의 상관관계를 올바로 정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1) 청소년 문제의 근원은 한창 문화적 욕구가 왕성하고 성에 대한 관심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향유의 권리를 박탈하고 지옥같은 입시경쟁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데서 발생하고 있다. 숨 쉴 기회나 공간을 주지 않고 시공간적으로 압착할 경우 혈기왕성한 청소년들은 학교 밖으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주된 원인인 입시 경쟁을 완화하거나 없앨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난 수십년의 시행착오를 보거나 앞

으로 더욱 치열해질 자본주의적 경쟁을 고려할 때 입시문제의 발본적 해결은 쉽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적어도 문화향유의 권리만큼은 현재라도 정책의지만 있다면 허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학교 안팎에서 청소년들에게 숨을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청소년보호법과 청보위의 활동은 문화연대가 지난 6월에 개최한 토론회(<청보법, 청보위 이대로 좋은가>, 6월 21일)에서 지적했듯이 청소년문화를 진작시키기보다는 모든 매체들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걸러내는 일에 주력하고 있어 사실상 청소년들의 문화적 권리를 억제하고 문화적/예술적 감수성을 왜곡, 억압하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문화부 산하의 청소년위원회의 활동이 청소년 문제의 해결에 보다 효율적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 경우도 청소년 문화의 집 개설이나 유스페스티벌의 개최와 같이 전시용 사업과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치중하고 있어, 실제적인 효과는 미미하다고 보여진다. 문제는 청소년들의 문화적 향유권이 기나긴 정규교육과정 전반에서 거의 완벽하게 배제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정규교육 커리큘럼 내에서 문화교육의 비중을 늘리고 학교의 전폭적 재정 지원 아래 방과후 클럽활동을 다각도로 활성화시킴으로써 청소년기를 시공간적으로 가장 크게 지배하는 학교생활을 문화적으로 재편하고, 학제를 개편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문제는 다른 차원으로 이전될 뿐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시급한 것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청보위와 문광부 산하의 청소년위원회의 관계 정리가 아니라, 문광부와 교육부가 정규/비정규 교육의 차원에서 청소년 문화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관점에서 통합적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다.

2) 한편 현재 청소년 문제에서 또 하나 시급히 해결을 요하는 것은 음란폭력적 영상물이라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보다도 물리적 차원에서 자행되는 학교폭력과 악물남용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일이다. 그런데 현재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준사법권을 가진 1000명의 공무원과 18000명의 감시단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학교 폭력이 일어나는데 그들을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는 안하고 그냥 학교에다 주의만 주니까... 이게 무슨 청소년보호위원회입니까?"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와도 아무 일 아닌 듯이 교육청에 보고 하면 다 끝나는 것인가?" "저는 학생인데 우리도 미국처럼 학교에 경찰관이 배치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라도 안되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순찰을 돌면 어떻겠습니까?" : <청보법, 청보위, 이대로 좋은가>, 문화연대 토론회 자료집, 16-17쪽). 이는 청보위의 활동이 대중문화와 매체환경의 단속이라는 이데올로기와 감수성의 통제 차원에만 집중하고 있지 물리적 차원에서 자행되는 청소년 폭력은 상대적으로 외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현재의 청보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보다는 성인들이 정한 특정 이데올로기와 도덕적 기준에 따라 청소년의 문화적 성장과정을 강력히 통제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 만큼, "청소년통제법"이라고 불리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 안팎의 물리적 폭력이나 악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이 주목적이라면 경찰청과 통합하여 청보위에 속한 인력을 실제적인 단속 강화에 투입하는 것 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며(문화연대 <청보법...> 토론회 자료집 참조, 22쪽), 이 경우 매체에 대한 단속 문제는 영상물등급위나 간행물윤리위원회와 같은 매체 관련 전문 기구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보법과 청보위는 특별히 독립된 법과 기구로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다.

3) 그러나 개정된 청보법의 경우는 매체와 유통업소에 대한 단속과 사법조치 권한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영상물등급위와 간행물윤리위원회 같은 타법률 기구에 대해서도 권한을 행사하는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어 마치 국가보안법과 같이 타법률 위에 군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청소년 보호를 빌미로 성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문화적 향유의 권리가 억제되어서는 안된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허구적 표현물의 창작 내용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그 유통과정에 대한 사회적 관리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리를 엄격히 하기 위한 노력은 차치하고 성인들을 위한 허구적 표현물의 창작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청소년 보호를 빌미로 사회 전체를 특정 방향으로 길들이려는 억압적인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 때문에 청보법은 이제 효력을 상실해야며 곧 개정될 국보을 대체할 '제2의 국보법', 20세기 '정치검열'의 시대에서 21세기 '문화검열'의 시대로의 이행을 주도할 장치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청보법이 매체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동일 사안에 대해 법률적, 제도적으로 상이한 법과 기관이 관여 토록 함으로써 기능중복과 정책적 혼선을 야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영화등급위나 간행물등급위보다 상위법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성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문광부가 입법예고한 이번 영화진흥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

될 경우 “성적 묘사가 과다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될 경우” <18세 이상 가> 등급이 아니라 <제한상영관>에서 상영되어야 하므로 청소년보호를 빌미로 성인들의 복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빈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천국의 신화>의 경우도 간행물등급위에서 청소년용으로 납본필증을 받았음에도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해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것도 같은 경우라 하겠다. 청소년보호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도 이런 점에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청보법은 긍정적인 면에서바 부정적인 면에서나 불필요할 뿐아니라 민주주의의 확산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화의 대세를 거스르지 않도록 현재의 청보법은 국보법과 함께 폐지되고, 21 세기의 새로운 문화교육을 위해 <청소년문화진흥법>(가칭)으로 거듭 나야 할 것이다. ■

<천국의 신화>, 문화검열, 청소년보호

: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보호의 이분법을 넘어서

이동연 / 문화언대 청소년문화위원장

1. <천국의 신화>와 청소년보호

지난 7월 12일 사법부는 만화가 이현세 작 <천국의 신화>를 미성년자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단성교장면이나 수간장면 등에 나타난 ‘음란성’과 인간과 짐승이 별이는 전투장면에서의 ‘잔인성’ 등을 놓고 볼 때, 청소년에게 배포할 수 없는 음란물로 보인다”는 유죄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천국의 신화>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를 곰곰히 생각해 보면, 역시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일반인들의 정서라면 <천국의 신화>를 청소년 유해매체로 판결을 내린 보편적 근거를 제시했다.

문화적 표현물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늘 그랬다시피 일반인들의 보편 정서를 내세우며 보수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고수하는 법적인 장치에 의존해왔다. 사법부가 말하는 보편적인 정서는 문화적 표현물에 대한 수용자의 ‘문화적 감성’, 혹은 ‘문화적 복권리’에 기초하기보다는 문화적 표현과는 무관하거나, 심지어는 대립될 수 있는 인륜이나 도덕률에 기초한다. 이러한 반응과 대응은 그런 점에서 두 가지의 외연 관계를 숨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사상의 자유가 아닌 성적 자유를 표현한 문화적 표현물일 경우 법적·제도적 통제는 표현의 상대적 자유를 허용하는 듯하면서 문화적 표현 전체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반영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요컨대 <천국의 신화> 성인판에 대한 ‘18세 미만 구독불가’라는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판정과, 작품 수정 후 ‘간윤’의 납본필을 받아 <천국의 신화> 소년판을 합법적으로 유통시켰지만 검찰의 고발에 의해 청소년 유해매체로 판결받게되는 일련의 과정은 청소년(혹은 미성년)을 유해매체로부터 보

호한다는 명분을 이용하여 문화적 표현물에 대한 일정한 구별짓기를 감행하는 과정과 일치한다. 음란한 것의 기준은 표면적으로는 문제의 작품을 청소년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인가 판단에 근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성사회 내에서 음란한 것을 색출하는 기준, 말하자면 음란한 것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을 드러내는 기준이다. 그렇다면 사법부는 집단성교, 수간, 폭력적 장면은 청소년에게는 유해하지만, 성년들에게는 유해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인가? 분명히 그렇지는 않다. <천국의 신화>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의 숨은 원칙은 <천국의 신화>가 청소년에게 유해한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보편 윤리와 정서에 반하는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는 문화적 표현물의 상대적 허용을 최대한 개방하는 원칙이 아닌 그 상대적 허용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원칙으로 기능한다.

둘째, 이러한 사법부의 기준이 지배이데올로기의 정서와 가치를 재생산하는 구성요소로 사용된다는 지적은 진부하지만, 핵심적이다. 우리 사회의 지배이데올로기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천민자본주의가 낳은 '부르주아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이다. 이는 경제적인 지배와 윤리정서적인 지배의 접합에서 나오는 것이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보수'와 '문화적인 보수'의 접합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또한 지배의 효과가 정치적인 것에서 문화적인 것으로 확대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사상의 자유를 표현하는 문화물에서 성적 자유를 표현하는 문화물로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적 자유를 표현한 문화물을 심의하는 기준이 '음란물'의 여부에 있다고 했을 때 그러한 '음란함'의 기준에는 이미 성적 표현을 불경한 것, 혐오스러운 것으로 단정하려는 편견이 숨어있다. 따라서 성적표현과 폭력성이 문화적 표현의 심의에 있어 가장 지배적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라면,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질서를 수호하는 원칙들 하에서 이루어진다.

요컨대 '청소년보호'라는 개념들이 네거티브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그런 이유에서이다. 청소년들의 광범위한 일탈행위들은 단지 청소년 내부의 문제로 축소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이행된다. 아니 청소년 일탈행위는 그 자체로 사회적 구조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은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차단하는 방어기제로 사용될 뿐 아니라, 지배질서의 유지를 위해 금

기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특히 문화적 행위들)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기제로 사용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이 동성애를 변태적인 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표현하는 매체를 유해매체로 정하고 있거나, 사상의 자유를 표현하는 매체까지도 청소년유해매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청소년보호'의 기준은 청소년인가 성년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사실 이것조차도 문제이지만), 지배적 질서에 반하는가 아닌가에 있다. <천국의 신화>가 영화 <거짓말>이 무혐의 판결을 받을 것과는 정반대로 예상외로 음란물로 판정받게 된 것도 '청소년보호'라는 명분과 이데올로기가 보이지 않게 지배질서의 정치적 효과를 발휘하는 데 제격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2. <천국의 신화>는 음란물인가

문화적 표현물에 대한 특별한 가치평가와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그것을 거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천국의 신화>를 음란물로 판정한 사법부의 조치를 당연한 것으로 반긴 사람들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보호는 '표현의 자유'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한다. 2) 표현의 자유가 사법적 판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3) 작품 안에 근친상간, 수간, 혼음 장면이 표현되었으면, 그것의 상징적인 의미와 맥락과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 음란한 것이다. 4) 작가인 당사자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상업적 수혜자이다.

1)은 청소년들의 심각한 사회일탈행위, 특히 모방범죄행위나, 성인용 음란행위가 모두 유해한 매체를 무분별하게 습득한데서 비롯되었다는 논리에 기반한다. 청소년들의 모방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폭력적이고 음란한 매체를 차단해야한다는 명분이 당연히 제기된다. 일례로 97년 10대 폭력조직인 '일진회'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 가담자들이 만화의 폭력장면을 모방한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자마자, 만화책에 대한 일대 단속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1700여종, 510여만권의 만화책이 만화방에서 수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논리는 두가지 문제점을 낳는다. 첫째는 건전한 정신함양이라는 청소년보호 명분은 청소년을 보호해야한다는 당위성을 넘어서, 문화적인 행위를 한계지움으로써, 권력의 훈육과 계도의 우선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둘째로 모방범죄 행위에 대한 경계와 공포감은 청소년의

일탈행위에 대한 원인을 곧바로 문화적 매체에서 찾는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매체를 규제해야 하고, 역으로 매체를 규제하는 길만이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인과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이러한 논리는 비약되어 최근에 청소년들의 원조교제나 윤락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천국의 신화> 같은 만화는 청소년보호 차원에서 격리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자연스럽게 만든다. 말하자면 <천국의 신화>와 같은 만화를 청소년들이 보게되면 그대로 따라하거나, 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갖는다는 것이다.

2)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표현의 자유의 특수성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다. 대체로 사법부의 입장은 문화예술창작물이라고해서 사법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말하자면 표현의 행위가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위배되면, 사법적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천국의 신화>의 경우도 이러한 일반적인 입장 하에서 사법적 처분을 받았다. 표현의 자유를 법으로 통제하는 것이 부조리하다고 생각하는 문화예술계의 입장과는 반대로, 표현의 자유가 법적인 판단의 범위 밖에 있다고 보는 것도 부조리다는 것이 사법부의 입장이다. 이것 역시 사법부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물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그것이 사법적인 판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문제는 사법적 판단과 판결은 문화적 표현물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있다. 문화적 표현물이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그것이 다른 작품을 표절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고 불법적인 유통을 하는 등등의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이외에는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표현의 자유는 사상의 자유와 더불어 헌법이 정한 국민들의 기본 권리이기 때문이며, 둘째는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심판하는 당사자의 문화적 이해와 철학이 대단히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청소년이 <천국의 신화>를 보고 만에 하나라도 그 작품의 맥락과는 무관하게 표현된 내용 그대로 사실적으로 해석하여 그와 유사한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천국의 신화>를 일종의 '모방선동죄'로 사법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가? 아니 그러한 사태를 미리 가정해서 그 작품을 유해하다고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표현의 자유가 구체적인 범

죄행위로 귀결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초법성, 치외법권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상에 명시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법에 대한 문화의 우선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법적 적용의 타당성을 말하는 것이다. 요컨대 <천국의 신화>가 유죄라고 말하는 것은 집단성교와 수간이 보편적인 윤리와 어긋나고 그것이 또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단성교와 수간이 문화적 표현물이 아니라 강제성이 없이 설사 실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이라해도 당사자들을 윤리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표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타당성과 객관적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지는가? 현실에서 벌어진 명백한 사실이 아닌, 허구적 표현물에 대한 해석의 차원에서는 법적 판단이 신중해야하며,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이 최대한 객관적이어야 한다. 윤리적인 비난정도로 끝날 수 있는 것을 사법적 판결로 귀결시키는 이번 사건은 교묘하게도 사법적 판결의 절대 근거를 청소년보호라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명분에서 찾는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은 결국 청소년보호법이 존재하고, 그 법이 명시한 모호하고도 불명확하며 규정 조항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다. 일반적으로 자명하고, 당연한 명분처럼 보이는 '청소년보호'는 사실은 그 말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맥락을 가질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사법적 판결에 있어서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청소년보호법이 유해매체로 규정하는 근거나, 실제 규제 과정은 모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과정과 일치한다.

3)은 2번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문화적 표현물의 허구성과 상징성도 법적인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작품의 전체 맥락과는 무관하게 일부 음란한 장면이 묘사되었으면 작품 전체를 음란물로 규정할 수 있다는 사법부의 입장과도 통한다. 사법부의 판결기준은 집단성교와 수간 등의 일부 장면이 어떤 맥락 하에서 표현될 수밖에 없는가를 고려하지 않는다. 알다시피 만화 <천국의 신화>는 우리의 상고사인 '태극신화' 바탕으로 해서, 그려진 신들의 이야기, 말하자면 한국적 신화를 재현한 상상물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소년판 <천국의 신화>의 도입부는 하늘의 문이 열리기 전인, 말하자면 인간의 문명이 생겨나기 이전의 혼돈스런

세상을 우화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여기서 개벽천지의 설화의 배경으로 혹은 그 역사의 과정으로 그려지는 근친상간과, 혼음, 수간은 음란한 성적 욕구, 혹은 변태성욕과는 다르게 인간이 자연과 분리되는 과정, 인간이 문명을 얻어나가는 과정에 대한 상징적·신화적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한 해석이다. 가령 이 장면을 보고 음란한 변태성욕을 그려낸 것이라고 사법부나 청소년보호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말한다면, 그들은 문화적인 몰개성론자들이거나, 아니면 아주 머리가 나쁜 사람들일 것이다. 그렇게 치자면 <천국의 신화>보다 더 음란한 일본만화들은 수도 없이 많다. 그렇다면 사법부나 청소년 보호론자들은 굳이 억지를 부린다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천국의 신화>를 음란물로 규정하려 했을까?

여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청소년들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여전히 기성세대의 가치관과 기준에 따른다는 점이다. 법적 판단의 기준에는 청소년에게 윤리적 금기를 가르쳐야하는 사명감, 청소년들은 그림에 대한 상징적, 신화적 해석의 능력이 부족할 거라는 선입관, 그리고 그림의 충격이 상징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모방할 것이라는 공포감 등이 개입된다. 둘째는 문제가 된 장면이 설사 전체 맥락 속 일부에 해당되고, 그에 따른 신화적인 해석력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인정한다해도, 장면 자체의 묘사는 또 다른 영역으로 읽혀질 수 있고, 그것이 또 다른 맥락을 구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요컨대 또 다른 맥락이란 음란한 것과는 다른 것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즉 천국의 문이 열리는 과정에 묘사된 근친상간, 혼음, 수간은 음란한 것보다는 '혐오스러운 것', '불쾌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 묘사는 이제 영역이 전환되어 성욕의 대상이 아니며, 자신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정서와 가치에 도전하는 불쾌하기 짝이 없는 것이 된다. 이 불쾌감은 논의를 조금 확대하자면 우리의 조상을 그리는 건국신화에 대한 불쾌하고 혐오스런 상상력을 거세하려는 부르주아 기성지배 질서의 반응이기도 한 것이다. 셋째, 청소년보호를 외치는 단체나 개인들이 주로 기독교인들이거나 기독교 단체에서 핵심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천국의 신화>가 제시하는 건국신화는 일종의 미신이며, 기독교의 창세신화를 욕되게 하는 상상력이다. <천국의 신화>를 신화와 우화의 2차적 허구 묘사가 아닌 그야말로 그려진 그대로의 사실로 받아들이게 될 경우, <천국의 신화>는 청소년보호라는 명분을 떠나 반기독교적 우상숭배, 이교도적 행위에 해당된다.

4)는 청소년보호론자들이 늘 사후적으로 하는 말들이다. 이 논지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지 못하는, 논리적 모순을 드러낼 뿐더러, 그래서 속된말로 (X)와 (÷)도 구분못하는(못가리는) 비꼼과 억지로 일관하는 데 있다. 음대협의 권장회 총무는 올 1월 문화연대가 주최한 영화 <거짓말> 공청회 토론회에서 이번 사태를 영화 <거짓말> 제작진들이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지난번 <천국의 신화> 사태가 터지고 난 후 MBC 100분토론에 나와 이현세씨가 이번 사건으로 <천국의 신화>가 많이 팔린 것(실제로 일선 만화가게를 서베이 한 결과 판매에 큰 영향이 없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천국의 신화> 소년판은 이미 전량 수거되었거나 폐기처분되었으니까)에 대해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음대협의 논리대로라면, 거짓말의 제작진인 '신씨네'나 이현세씨는 아마도 상업적인 성과를 올리기 위해 사건을 사전에 조작했거나, 철저한 시나리오에 음대협과 사법부 관계자들을 매수하여 사건을 극적으로 몰고갔을 거다. 이 논리적인 모순을 왜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표현의 자유, 혹은 문화적 표현물이라는 명분을 공격하는 데 있어 상업적인 의도성을 말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영화 <거짓말>도 만화 <천국의 신화>도 상업적인 매체는 분명하며, 이윤을 추구해야하는 당연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 두 작품들이 과연 처음부터 돈을 벌기 위해 옷을 벗기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며, 신화적 상상력을 표현하기 위해 사회적 금기를 과감하게 표현했는가하는 점이다. 그러나 <거짓말>은 예외지만,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 소년판은 불행히도 상업적으로는 실패한 작품이다. 음란성을 상업성으로 동일시하는 과정은 모든 문화적 표현물에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된다. 요컨대 <천국의 신화>와 이른바 대학로의 '벗기기 연극'은 구별할 줄 알아야하며, 만일 그것이 구별될 필요가 없다거나, 실제로 구별이 안된다고 한다면, 할말이 없으며 아마도 이에 대한 대대적인 '문화전쟁'이 필요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사법부의 판결대로 정말 <천국의 신화>는 객관적으로 음란물이라 할만한가? 결론적으로 작품 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천국의 신화>는 음란물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 음란물은 시종일관 음란한 것을 표현하는 맥락이 있어야 한다. 요컨대

비디오 가게의 '준포르노비디오들'은 음란한 것에 대한 일관된 맥락이 존재한다. 그리고 음란한 것을 소프트웨어/하드코어로 구분하는 것도 완전히 통일되진 않았지만 대체적인 기준이 있다. 그렇다면 <천국의 신화>를 음란물로 규정한 일관된 기준이 란 무엇인가? 음란한 것의 지속성, 일부가 아니라 목적 자체가 음란한 것, 수용자에게 지속적인 성욕을 유발시키는 것 등등의 기준들. 이런 기준으로 보자면 <천국의 신화> 소년판은 음란한 것이 아니며,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를 섭렵하는 10대들에게 성욕을 불러일으키지는 않고, 대신 조금은 특이하고 희안한 표현 정도로 보일 것이다. 더욱이 <천국의 신화>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환인이 세상을 지배하여 그 자손들이 문명을 배워나가는 4권 이후로는 도입부와 같은 묘사는 거의 그려지지 않고, 오히려 인간이 혼음과 근친상간과 같은 야만의 생활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일정한 가치관이 형성된다. 문제는 앞서 계속 언급했듯이 청소년들의 문화적 표현물의 수용에 대한 기성세대들의 오인된 상상력과 앞선 판단, 자의적인 해석이며, 이것이 결국은 청소년보호를 넘어서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려는 기제로 확대된다라는 점이다. 사법부나 청소년보호론자들 역시 그 장면이 상징적이고 신화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자신들의 지배적 질서와 가치를 지키기 위해 <천국의 신화>는 외면할 수 없는 텍스트가 된다. 말하자면 일부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 수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내적인 조건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천국의 신화>는 그 자체가 음란물이라기 보다는 역으로 지배적 가치와 질서가 음란하게 보려는 일종의 음란한 시선에 의해 포획된 대상이다.

3.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과 문화검열사례

최근 몇 년 사이 청소년 문제가 과거와는 다른 성질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학교, 가정, 정부 및 청소년 관련 단체에서 모두 인식하고 있는 바이다. 그렇다면 과거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문제가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에 터져나온 청소년 문제를 떠올려 보자. 교실붕괴, 왕따현상, 청소년조폭, 원조교제, 10대 매매춘, 인천호프집, 부친살해..... 이러한 사건들 중에는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내용과 성격, 사건의 밀도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발견된다. 이것은 단순한 차이라기 보다는 문제의 심화, 혹은 문제사

안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해석의 근본적인 구별짓기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은 그래서 사회적 모순들의 표출로 나타나거나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장치들의 위기를 야기시킨다.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무마시키기 위한 대책의 의미가 강하게 나타난다. 청소년 문제의 대책의 차원으로 등장한 게 이른바 97년에 등장한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보호위원회이다.

청보법은 96년 11월 16일 국회에서 청소년 보호법안이 발의되어 97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청보법은 다음과 같은 재정 취지를 갖고 있다("청보법은 우리 사회의 자율화와 물질만능주의의 경향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음란, 폭력성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유해약물 등의 청소년에 대한 유통과 유해한 업소로 청소년 출입 등을 규제함으로써,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고 나아가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어 97년 7월 5일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설치되고, 97년 11월 12일에 청소년 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발의가 있었고, 99년 7월 1일 청보법이 새로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개정된 '청보법'은 1) 청소년 보호연령을 고교 3년생이 포함되도록 현행 18세에서 19세로 조정하고 미성년자 보호법을 폐지, 2) 청소년 유해환경 개념에 폭력, 학대 등 유해행위를 포함, 3) 유해매체물의 결정과 결정 취소의 고시를 기존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고시하던 것을 의무화, 4) 미성년자보호법의 폐지와 함께 동법에 규정되어 있던 외국 불량만화 등에 대한 규제조항을 청보법에 흡수하여 신설, 5) 청소년에 대한 각종 유해행위를 금지하는 조항과 벌칙을 신설, 6) 유해업소에 단란주점, 유흥주점영업, 소주방, 호프, 성인 대상으로 성적 접대나 유사행위를 하는 영업 등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보위가 결정, 고시하는 방법으로 확대 지정, 7) 청소년 출입 제한 구역을 청소년 동행금지지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 구역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경찰서장이 청소년의 통행을 저지, 또는 해당지역 밖으로의 퇴거 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다.

개정된 청보법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청소년 보호연령이 종전 18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되면서 '미성년자'라는 명칭이 '청소년'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매체와 유통업소에 대한 단속과 사법조치 권한을 청보위가 대폭 확했다는 점이다. 미성년자에서 청소년으로 규제의 대상에 있어 그 명칭이 변경된 것은 10대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통해 규제의 대상을 일반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말하자면 비행, 범죄행위에 대한 명확한 자기 책임성을 부과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청소년 보호의 원활한 부서별 연계와 실제적인 효과를 위해 개정된 청보법은 사실상 '청소년보호' 차원을 넘어서 청소년에 대한 법적,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통제 창구로서 기능한다. 청보법은 청소년 폭력, 약물, 매매춘과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 계도적인 여과 장치가 아니라 분명하게 법적 강제력과 신체적, 감성적 자유의 구속력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국가의 청소년 정책의 전환에서 청보법과 청보위는 어떤 구성적인 요소로 기능할까?

1) 먼저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청보법이 청소년문화를 활성화하는 정부의 정책에 있어 상대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점이다. 청보법은 기존의 미성년자보호법이나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자체 검열의 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정해서 그 검열과 통제를 강화시켰다기보다는 기존의 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범위 내에서 관련 적용 사례들을 통합하거나 재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말하자면 청보법은 긴급한 통제와 규제라는 현안에서 제기된 특수한 담론적인 효과를 생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 그런 점에서 청보법은 청소년문화의 심각성에 대한 대응보다는 청소년의 사회적 비행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다. 청소년의 유해매체라고 규정하는 청보법의 판단과 기준 역시 문화적인 판단이 아니라 윤리·도덕적인 판단에 기운다. 청보법의 법 적용 사례가 대체로 청소년들의 유해매체 접촉경험에 있지 않고 그 유해 매체를 만들거나 과는 성년들에 있다는 점을 사회윤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청소년들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문화적인 차원에서 보면 청소년의 문화의 '불권리'를 앗아간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3) 따라서 청보법은 청소년 정책에서 두 가지 차원에서 양면성을 갖는다. 첫 번째 양면성은 청보법의 검열 사례들은 대부분 문화매체가 주를 이루지만, 그 기준은 문화적인 것이 아닌 윤리적인 것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이런 양면성 때문에 청보법의 무리한 법 적용 사례들이 문화매체 검열과정에서 나타나게 되었다(요컨대 게임 <스타크래프트>, <조페디의 앨범>, 영화 <춘향뎐> 등의 적용 사례). 두 번째 양면성은 청보법이 표면적으로는(명분상으로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심층적으로는(사실상으로는) 청소년들을 통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양면성은 청소년 정책 자체의 양면성을 그대로 지시해 준다. '보호'는 그 의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서로 상반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예컨대 청소년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는 의미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긍정적인 참여 정책으로 볼 수 있지만, 연령의 차이만으로 청소년들을 불량매체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은 불량매체의 기준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 그 자체로 부정적인 규제 정책으로 기능한다.

4) 청보법과 청보위의 탄생은 국가의 청소년 정책이 최초로 본격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청소년 정책은 그동안 완전한 통제에서 상대적인 자율성 확대로, 다시 상대적인 자율성 확대에서 상대적인 통제로 변화하고 있어 보인다. 청보법은 청소년에 대한 통제를 사회적 통념으로 일반화했던 방식에서 구체적인 제도를 통해 합리적이고 포괄적으로 감시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정보법이 국가의 청소년 정책의 한 축을 형성하면서 생겨난 부정적인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의 보호가 대체로 단속과 규제 통제쪽으로 집중되면서 청소년의 인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이다. 10대 매매뿐이나 원조교제를 단속 처벌하여, '청소년' 상업적 유락행위로부터 보호, 순화시킨다는 명분을 제외하고는, 정보법은 대체적으로 10대들의 신체를 구속하는 법으로 기능해왔다. 흡연 음주 단속에서부터 레드존과 같은 금지구역의 구획, PC방, 노래방, 비디오방과 같은 소비공간에 대한 제한된 출입 등 기존의 형법이나 미성년자보호법(1961년제정, 1999년 폐지)보다 훨씬 포괄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으로 문화매체에 대한 검열을 강화시켰다. 현행 정보법(2장 8조)에 의하면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여부를 심의하여 청소년에

세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해야한다. 다만 이 법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매체물의 윤리성, 건정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고 있다. 또 2장 8조 2항에는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각 심의 기관이 당해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유해 여부를 심의하지 아니한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해놓고 있다. 이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기존의 간행물윤리위원회와 등급위원회의 심의를 조정하는 2차 문화겸열기관으로의 기능을 가능케 하는 조항들이다.

정보법에 의한 문화겸열은 2차적이라는 점에서 유해매체의 규정을 과도하게 적용하게되는 위험성을 제도적으로 안고 있다. 1차 문화매체 심의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정보위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또한 정보법 자체의 모호한 조항들 때문에 시행령 역시 대단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적용의 대상과 영역을 갖게 됨으로써 과도한 문화겸열을 부추기고 있다. 정보법이 정해놓은 청소년 유해매체의 심의 기준을 보자.

-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
-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사와 악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
-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 유해매체의 심의 기준이 위와 같이 모호하다 보니 자연 현장에서 문화겸열의 사례들은 그 폭과 다양성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 졌다. 정보법이 생겨난 후에 있었던 대표적인 문화겸열 사례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97. 7. 15: 일본 음란, 폭력만화의 불법 복제 등 불량만화 1700여종 510만여권이 청소년 유해매체로 판정. 정보위의 조치에 따라 불량만화 목록은 경찰 등 단속기

관에 통보되며, 일을 위반, 청소년에게 대여 판매 배포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출판사나 제작자가 유해표시나 포장하지 않을 경우엔 2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97. 7.: 각 방송사 연예인의 복장과 행동을 규제(의상, 염색, 악세사리 규제).
- 97. 8.: 재야단체 간행물에 청소년보호법 적용: 한국 간행물 윤리위원회는 8월 19일 서울민주청년단체협의회의 계간 회원지 <서울 청년> 8호를 심의 한 뒤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 위원회는 이 계간지에 실린 7.4 남북 공공성명의 의의와 통일 운동의 전망이란 제목의 글에 담긴 미군철수 주장과 민족민주진영의 주도로 통일지향의 정권을 수립하자는 제목의 글에서 대선자금의 공개와 김영삼 정권의 퇴진을 주장한 대목이 청소년에게 해롭다고 지적.
- 99. 3. 16: 조 PD 음반 <조PD 인 스타덤> 청소년 유해판정 판매금지 결정
- 99. 3. 26: 정보위, ‘스타크래프트’ 유해여부 조정권 행사.
- 99. 5. 17: 가수 김진표씨 곡 <추락>이 근친상간의 내용을 담은 이유로 공진협(한국 공연예술진흥협의회)이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
- 99. 6.11: 일본 소설가 하나무라 만케츠의 <게르마늄의 밤>에 대해 간행물윤리 위원회는 노골적인 성묘사, 동성애, 청소년 성접촉 등 10여군데가 청소년보호법에 저촉된다고 이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
- 99. 11. 29: 연극 <로리타>의 여고생 알몸연기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연출자등 연극 관계자들의 사법처리
- 00. 1. 6: 영화 <거짓말> 제작자와 개봉극장주들이 음대협에 의해 음란물 제작 배포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당함.
- 00. 2. 1: 임권택 감독의 영화 <춘향뎐>이 미성년자인 춘향역의 여배우의 가슴이 노출되는 등의 장면이 영리 또는 홍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 정보법 26조 2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고발을 검토
- 00. 5. 30: DJ. DOC 5집 <The Life..... DOC BLUES>가 한국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회고발적인 칙설적 표현을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로 결정, 공중파 방송사들은 수록곡 전체에 대해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림.

정보법의 검열은 음주, 흡연, 약물복용, 유해공간 출입금지와 제한시간 이용 등 청소년들의 신체를 구속하는 기능과 함께 문화적 표현물에 대한 통제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 문화매체를 검열하는 표면적인 목적은 청소년보호에 있지만, 실제적인 목적은 청소년보호라는 명분을 통해 문화적 표현물의 검열 기준을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 기존에 존재하는 검열기관과 정보위가 다른 점이 있다면, 검열의 수위나 대상이 훨씬 광범위해졌다는 점이다. 정보위는 장르별로 기능하는 현존 심의(검열)기관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체계적인 검열체제를 만드는 2차 검열기관으로 기능한다. 요컨대 정보법은 청소년보호라는 명분으로 사상표현의 자유, 사회고발적 메시지, 하드 코어적 내용, 스타일과 발언 등등을 총체적으로 검열하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4. '청소년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이분법을 넘어서

정보법이 과거 어느 경멸장치 못지 않게 위력을 발휘하면서도 대중들로부터 나름 대로 호응을 얻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청소년을 보호해야한다는 논리 때문일 것이다. 청소년 보호는 특히 지난 몇 년간 청소년 일탈행위들이 증가하면서 학부모와 교사를 위시해 기성세대들로부터 환영받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들의 모방범죄 혹은 선부를 기성행위를 부추기는 폭력적이고 음란한 매체를 단속하는 것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런 점에서 표현의 자유가 청소년보호라는 대당관계에 놓이게 되면, 일단 그 맥락과는 무관하게 후자는 을 전자의 전제조건 내지는 예외적 단서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요컨대 '음대협'이나 '기윤실'이 늘 주장하듯이 표현의 자유는 허용되어야 하지만 청소년보호의 명분은 지켜져야 한다는 식의 논리가 일반 대중들로부터 설득력을 얻는 것도 사실이다. 표현의 자유가 과거 방식대로 파시즘과 대당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보호라는 대당관계에 놓이게 됨으로써 그것의 절대적 옹호를 사실상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보호가 왜 대당관계로 간주되어야 하는지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물론 이 대당관계가 문화적 보수주의와 자유주의(혹은 진보주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화전쟁’의 한 국면 가운데서 형성된 것인

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가 의문시하는 것은 그러한 국면이 아니라 왜 그 대당관계가 대중들에게 자명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는가이다. 그것은 그 대당관계를 자명한 것처럼 만드는 특정한 이데올로기 때문이다. 그 특정한 이데올로기란 대중들 스스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자기검열의 이데올로기이다. 대중들 다수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의 장기적인 훈육을 통해 사실은 문화적 이해와 포용력에 대해 폭넓은 가치관을 가지지 못한다. 문제는 창작자의 관점에서 보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대중들의 관점에서 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수용력'이다. 문화적 수용력의 획일성, 비경험성, 비자발성으로 인해 청소년보호라는 문화외적인 논리가 외삽되었을 때, 대중들은 표현의 자유와 볼권리에 대한 기본 권리를 망각하게 된다. 이로써 훈육과정을 통해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리는 청소년보호라는 상대적인 명분에 지배를 받는다. 그러한 명분을 제도적으로 관철시키려하는 장치가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청소년보호법이다.

그러나 사실 청소년보호라는 명분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와 대당관계에 놓여있는 청소년 보호는 '언제나 이미'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보법에 의거 한 '청소년보호'란 규제나 격리의 의미가 강하다는 점에서 특정한 이데올로기와 맞 닿아 있다. 요컨대 청소년보호를 인권과 문화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사용했다면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보호는 대당관계가 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표현의 자유는 청소년보호라는 명분과 대당관계가 아니라 특정한 이데올로기와 대당관계를 이루는 바, 청소년보호에 대한 특정한 이데올로기의 해체없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객관성이 제대로 인지될 수 없다. 문화매체의 검열을 해체시키기 위해서도 현형 청보법에 대한 반대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며, 표현의 자유는 청소년보호라는 대당관계에서 벗 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청보법과 청보위와 관련하여 어떤 비판적 대안들을 만들 수 있을까? 필자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며 글을 끝맺고자 한다.

- 1) 청소년정책의 능동적인 전환이 청소년보호를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면 청보법의 법조항 중 상당부분은 개정되어야 한다. 요컨대 청소년들이 자기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항

들, 요컨대 성폭력과 인신매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행위들을 제외하고는 미성년
을 특수한 보호주체로 일반화해서 규제의 기준을 보호의 기준으로 환원해버리는 사
항들은 개정되어야한다. 보호는 그런 점에서 절대적이기보다는 상대적이고 포괄적이
기보다는 선택적이어야하는바, 법의 일반적 적용은 무리가 있다. 청소년음주와 흡연
이 제한되어야한다는 보편적인 정서가 바람직한 하더라도 그 정서를 법으로 일반화
할 때 보호는 규제와 통제의 의미로 전환된다.

2) 청소년 정책은 규제와 통제의 성격이 강한 부정적인(negative) 보호정책 보다
는 청소년들의 인권과 복지를 신장시키는 긍정적인(positive) 보호정책으로 전환되어
야 한다. 그런 점에서 부정적인 보호정책은 청소년 비행행위를 확실히 뿌리뽑겠다는
획일적인 사고관에서 벗어나 그 위험성을 최소화한다는 개방적인 사고관으로 바꿔
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능동적인 보호정책은 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통념들에 대
한 새로운 시각교정, 요컨대 청소년을 모든 활동영역에 있어 능동적인 주체로 인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청소년의 인권과 복지 생활권을 침해하는 사례들에 대한 보호,
나가서는 그들을 동등한 자율주체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청보법이 검열하는 주요 영역 중에서 매체에 대한 규제는 간행물윤리위원회나
영화등급위원회와 같은 기존의 매체 심의기관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바, 청보법의 문화매체 검열은 청소년문화정책에 있어 불필요한 측면이 많다. 청소
년의 건전한 문화를 육성한다는 것은 기성세대의 자기기준에 의한 것일 수가 있어
청소년들의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매체의 수용
의 당사자인 청소년은 검열의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배제된다. 청보법의 문화검열
은 상위법으로서 일종의 2차검열로 기능하기 때문자연 무모한 적용사례를 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표현의 자유의 침해와 문화산업의 육성의 제약을 가져온다.

4) 현재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새로운 문화의 세기에 걸맞는 청소년 정책을 위해
서 바람직하지 못한 조직이며, 새로운 위상과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
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포지티브한 청소년 정책을 위해 청소년육성위원회나 청소년
교육문화위원회로 그 위상이 전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진
흥법으로 대체입법화 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 조직의 기능 전환이 가능할 경우,

조직의 형태와 인원은 새롭게 재구성되어야한다. 그럼 점에서 청소년 교육과 문화
인권 예술에 관련된 실질적인 전문가들이 구성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직을 해
체하고 재구성하는 대안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이다. ■

■ 관련 기사 모음 ■

□ <한겨레21> / 2000년 8월 8일 / 조계완 기자

청소년 침해하는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은 오늘날의 청소년 문화가 주는 불안, 두려움, 공포로부터 어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제적(擬制的)으로 만든 장치일 뿐이다. 정작 청소년이 보호돼야 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으로부터다.” (문화평론가 이재현, ‘너희가 십대를 아느냐’란 글에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일상과 권리를 법과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이다. 97년 7월 시행된 이 법은 지난해 개정을 거쳐 최근 재개정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그만큼 이 법의 존재 이유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개정안은 줄곧 ‘더 많은’ 규제와 단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재개정안, 쌍벌죄 도입 추진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라는 것이 청소년보호법의 철학적 기반이다. 청소년 문화의 주체가 누구냐는 질문이나 표현의 자유와 권리 및 인권을 가진 존재로서의 청소년 개념은 애초 빠져 있다. 지난 7월 이현세씨의 만화 <천국의 신화>에 대해 법원이 미성년자보호법(지난해 7월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폐지)을 적용해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 <천국의 신화>는 청소년판을 만들면서 문제 장면을 수정했는데도 유죄를 벗어나지 못했다.

청소년보호법을 반대해 온 문화연대는 “미성년자들은 생각도 판단도 없는, 사리 분별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미성숙한 존재라고 지레 ‘염려하는’ 어른들의 인식이 이 법의 바탕에 깔려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 세계의 전 분야를 지배하고 있다. 비디오 음반 영화 연극 만화 책 방송 간판 벽보 등 모든 매체물을 대상으로 삼고 있고 유해매체물로 분류 되면 청소년에게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작자나 유통업자는 청소년 유해물 여부를 표시하고 유해물은 포장을 따로 하는 등 구분·격리해야 한다. 청소년

유해업소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 감상실 노래연습장 무도장 게임방 만화방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들 업소에서는 청소년고용이나 출입이 금지되고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는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문화연구가 고길섶씨는 “청소년보호법은 생활세계 모든 곳에 개입하면서 철저하게 성인의 세계와 미성년의 세계를 인위적으로 분리해냄으로써 새로운 적대전선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단서만 잡히면 청소년보호를 명분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무엇이든지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인권침해는 불심검문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청소년보호법 시행직후 경찰은 유흥업소에 드나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나 공원 주변에 모여 있는 중·고생들을 상대로 마구잡이로 불심검문과 몸 수색을 벌여 술과 담배를 가진 청소년들을 적발하기도 했다. 판매업소를 들춰내기 위해 이들을 검문하고 가방을 뒤진 것이다. 유해매체물로부터의 청소년보호의 실제 속 모습은 청소년들의 문화와 권리에 들이대는 ‘칼날’이라는 것이 고씨의 설명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청소년보호법 재개정안은 청소년도 처벌하는 쌍벌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팔거나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업주뿐만 아니라 해당 청소년도 금주·금연교육과 고전음악감상 같은 건전문화 체험교육 그리고 사회봉사명령을 시킨다는 게 개정 요지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들

이에 대해 최충우 한국청소년개발원장은 “청소년보호라는 명목 아래 많은 청소년을 처벌하고 범법자로 낙인찍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처벌하고 금지한다고 해서 학교에서도 만연된 청소년들의 술·담배 문제가 해결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문화평론가 이재현씨도 “이른바 일탈이나 비행을 중심으로 청소년을 보는 형사정책적 접근은 실패하게 마련이다. 공권력이 개입하고 관리하는 지금의 청소년 정책을 펴는 사람들 역시 미성숙한 존재”라고 공권력 만능주의를 경계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의 문화적 권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담론에 접근

하는 것마저 통제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유해매체물로 지정한 이희재씨의 만화 <간판스타>가 대표적이다. 우리만화발전을 위한 연대모임 이동수씨는 “<간판스타>는 음란물도 아니고 밑바닥 사람들이 살아가는 진솔한 삶을 다룬 것이다. 그런데도 만화에 등장하는 몇몇 술집장면 등을 문제삼아 실패한 인생들에 대해 청소년들이 고민해볼 기회를 차단했다”고 말했다.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반인륜적인 것’. 이 것이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유해매체물이다. 문화연대 이동연 청소년문화위원장은 “이런 규정으로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걸리지 않는 매체가 없다. 청소년을 유해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간행물윤리위원회나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다른 심의기관이나 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청소년보호법은 폐지가 마땅하지만 개정한다면 금지와 처벌 일변도에서 포지티브하게 청소년 문화를 전통하는 쪽으로(청소년진흥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대간의 통로를 가로막는다

청소년보호법이 개정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현실과 워낙 동떨어진 규정을 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법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호프집 노래방 비디오방 등에서 청소년에게 호객행위를 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밤 10시가 넘으면 청소년들의 노래방과 게임방 출입을 못하게 하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는 청소년 유해마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 시청불가 영화는 적색 원안에 ‘19’를 쓴 마크를, 심야영화에는 ‘심’을 쓴 마크를 방송시간 내내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조처가 현실적으론 청소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 법에 따라 유흥업소나 유통업소가 밀집해 있는 지역중에서 청소년들이 들어가서는 안 될 곳(청소년통행금지구역.Red Zone)으로 예순일곱 곳이 지정했으나 방배동 카페골목 등 상당수는 뒤늦게 ‘현실을 감안해’ 해제됐다.

문화연대 이동연씨는 이 법의 탄생과 법을 제정한 권력에 대해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했다. “청소년보호법은 어떤 비판이나 분석도 없이 청소년들의 감수성과 매체수용력을 자의적으로 재단한 어른들의 기준에 의해 만들어졌다. 찬성과 반대도 어른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청소년들의 주장과 표현은 전혀 개입할 공간이 없다.” 만화 <천국의 신화> 사태도 같은 맥락에서 바라봤다. “<천국의 신화>의 몇몇

음란한 표현이 ‘해로운지’ 청소년 자신들에게 물어보기나 했냐”고 그는 반문했다. 보호당사자인 미성년자에게 그의 인권이나 자유를 침해했는지 묻지도 않은 채 어른들이 자의적으로 섬사하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모든 매체를 포괄하는 청소년보호법을 두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미국 독일 영국 등은 영상 도서 약물 유해업소 등 분야별로 그리고 나이별로 청소년 관련법을 따로 두고 있다. 중앙대 최윤진 교수(청소년학과)는 “우리처럼 광범위하게 청소년을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 청소년보호법은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채 획일화돼 있다. 대학생도 술을 먹으면 범법자로 취급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대목도 많다”며 청소년을 보호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활동을 제약하는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청소년공동체 ‘품’의 심한기 대표는 청소년보호법이 세대간의 통로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이 법은 권리주장과 자기표현을 막고 가두고 묶는다. 그래서 아이들은 기성질서에 종속되거나 그로부터 일탈하든지 아니면 아예 어른세대를 거부한다. 기성세대에 소속되거나 단절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기결정권을 가진 사회·정치적 자율체로서의 10대를 부정하는 억압장치로 청소년보호법을 보는 시각도 있다. 고길섶씨는 “국가보안법이 ‘이적성’을 무기로 하여 마녀사냥을 즐겼듯 청소년보호법은 ‘유해성’을 무기로 그렇게 한다. 청소년보호법 지지자들은 청소년을 위해 성인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 논리는 청소년 자신들의 표현 및 소통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른들은 청소년들이 욕망하는 주체임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들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 욕망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 ■

□ <경향신문> / 2000년 7월 1일자 / 배장수·강진구 기자

영화 거짓말 “음란물 아니다” 검찰 무혐의 결정

음란성 여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영화 ‘거짓말’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검 형사7부(文晟祐부장검사)는 30일 음란폭력성조장매체대책시민협의회(음대협)가 지난 1월 형법상 음화 제조 반포 등 혐의로 고발한 장선우 감독, 제작사 신씨네 대표 신철씨, 영화개봉 광고를 낸 단성사 등 전국 43개 극장주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선량한 사회풍속'에 밀려 위험한 논리로 치부돼온 '성표현의 자유'가 처음으로 판정승을 거둔 의미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영화 '거짓말'은 장정일씨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원작으로 30대 유부남과 18세 소녀의 변태적 성관계 등을 묘사한 작품으로 지난 1월 8일부터 전국 101개 극장에서 개봉된 뒤 비디오로 출시됐으며, 음대협은 영화개봉 직전인 1월 6일 감독과 제작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무혐의 결정 이유=검찰은 "'거짓말'의 경우 영상물등급위 심의를 거친 데다 자진해서 문제가 되는 장면을 17분이나 삭제하는 등 음란물을 제작하려 한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음란물은 음란성에 대한 주관적 가치판단이 아니라 제작동기에 대한 사실판단, 주제의식이나 촬영기법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 근거로 특정부위를 근접촬영하기보다는 일정한 거리와 각도를 두고 촬영이 이뤄졌고, 관객들이 영화에 몰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남녀 주연배우의 인터뷰 장면이나 무미건조할 정도의 내레이션 또는 자막이 뜨는 등의 촬영기법을 사용한 점을 들었다.

따라서 검찰의 무혐의 결정도 엄밀한 의미에선 '거짓말은 음란성이 없다'는 것보다 '범죄구성요건상 음화제작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영화계. 시민단체반응=영화제작사 '신씨네'측은 "음란성 여부를 사법적 제재가 아닌 국민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영화인회의(이사장 정지영)측은 "음대협 등 시민사회단체의 여론물이는 과거 '정치적 검열'에 벼금가는 '문화적 검열'에 다름 아니었다"며 "앞으로 이런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피해야면 등급외 전용관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음대협은 "시민단체 수사의뢰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방치했다가 이제와서 무혐의 처리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앞으로 고검에 항고하고 책임 있는 검찰 인사

들의 문책을 요구하는 등 시민단체와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점 및 전망=이번 결정은 사실상 영상 표현물에 대한 검찰의 사후검열기능의 포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최소한 검찰은 앞으로 '거짓말' 수준의 성인영화나 영상물등급위에서 통과된 영화에 대해서는 형평차원에서도 사법적 제재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작소설이 2심에서까지 음란물로 판정이 난 상황에서 인쇄매체보다 훨씬 선정적이고 자극성이 강한 영상물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적잖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당장 거짓말에 10대 미성년자가 등장한 부분을 놓고 유엔인권위에서 아동학대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다. ■

□ <대한매일> / 2000년 8월 9일자 / 이종락기자

음대협, 영화 '거짓말' 무혐의 결정 불복

음란폭력성조장매체 시민대책협의회(대표 孫鳳鏞)는 8일 음란성 논란을 빚었던 영화 '거짓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불복,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음대협은 항고장에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상업적 동기로 음란물을 양산하는 생산자측의 논리에만 치우쳐 전전한 성풍속 보호라는 법익을 그르쳤다"면서 "왜곡된 법 논리로 음란물에 면죄부를 줘 제2, 제3의 '거짓말'을 양산토록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검은 지난 6월30일 '거짓말'에 대해 "이 영화에는 원작소설인 '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노골적 표현이 상당부분 완화됐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음란영화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

□ <문화일보> / 2000년 7월 1일자 / 김승현 기자

'거짓말' 무혐의 처분의미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시민 중심의 사회로 진입하는 징표가 나타나고 있다. 음란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온 영화 '거짓말'에 대해 검찰이 무혐

의 처분을 한 것은 우리 사회에 팽배한 도덕적 엄숙주의 이데올로기를 겉어내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예술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 소비자인 시민의 판단에 맡긴 것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관 주도의 획일적 문화에서 탈피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검찰은 영화 '거짓말'의 음란성에 대해 1일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사실 판단을 넘어서는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음란물에 대한 가치판단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우리 사회가 이 정도의 영화를 받아들일 수준은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도덕적 엄숙주의' 거품 걷기

이는 검찰이 97년 인기만화가 이현세씨의 작품 '천국의 신화'를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한 결과는 엄청난 인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중앙대 강내희(姜來熙·영문과)교수는 이와 관련,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이슈들을 국가기관이 나서서 처리하던 시대가 마감이 되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강교수는 특히 "이는 획일적 군사문화가 팽배한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다양성이 인정되기 시작하는 신호"라며 "다른 취향, 다른 도덕적 감수성, 다른 성적 기호 등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존중은 민주주의 발전은 물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필수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다양한 표현의 자유 존중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심광현(沈光鉉)교수는 "표현의 자유와 함께 남들이 표현한 것에 대한 수용의 자유도 중요하다"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는 남들이 표현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있어서 특정 지배세력의 기준에 따라 획일화시킨 경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심교수는 "보수적 가치체계의 수호를 대변하며 수용의 자유를 제한해온 검찰이 수용의 다양성을 인정한 것은 검찰 등 정부기관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관리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성균관대 정의숙(鄭義淑·무용학과)교수도 "우리 사회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상황으로 경제적 거품을, 남북정상회담으로 극우적인 반공이데올로기의 거품을 걷어냈다면 영화 '거짓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우리 사회에 팽배한 강권적인 엄숙주의 이데올로기를 겉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 <조선일보> / 2000년 7월 19일자 / 정우상 기자

이현세씨 만화 "유죄" - '천국의 신화' 청소년 유해 서울지법 300만원 벌금형
인기 만화가 이현세(이현세·44)씨의 작품 '천국의 신화'에 대해 법원이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작품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이 영화 '거짓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과 달리 법원이 이씨 작품에 대해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예술창작의 자유와 청소년보호론 사이에 논쟁이 촉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종필(김종필) 판사는 18일 98년에 미성년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표현의 자유와 미성년자들의 성적가치 보호라는 두 명분 사이에 많은 고민을 해 본 결과, 작품의 수용자가 청소년일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고대신화라고 하지만 집단 성행위와 동물과의 성교 등은 선정적인 표현으로 청소년이 받아들이기에는 유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판사는 "이번 판결이 작가들의 창작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청소년 유해작품의 범람을 막기 위해 법원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선고 후 "작품에 대한 공권력의 사법처리 이후 3년간 '자기검열'이라는 악몽으로 작품활동이 위축됐다"며 "시대착오적인 판단에 항소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국의 신화'는 동북아 고대 신화를 바탕으로 창세기, 단군을 거쳐 발해 멸망 시

기를 아우르는 대하 역사 만화로 성인용 8권과 청소년용 5권이 출간된 뒤 문제가 되자 출판이 중단됐다.

□ <한겨레 신문> / 2000년 7월 22일자 / 임범 기자

'천국의 신화' 파장 만화계 반발서 문화계 전체 반발로
이현세씨의 만화(천국의 신화)가 미성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이 만화계를 넘어 문화계 전반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만화탄압비상대책위원회, 문화개혁시민연대 등 22개 문화단체들은 21일 서울
안국동 철학까페 '느티나무'에서 이 판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부
당하고 반문화적인 결정에 반대하며 유죄판결이 번복되고 (천국의 신화)가 명예를
회복할 때까지 연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한국만화가협회,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등 만화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민족예술인총연합, 영화인회의,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대중음악작가연대 등
문화 각 영역의 단체들이 두루 참가했다.

또 이현세씨는 물론 김수정, 박재동, 하승남, 황미나씨 등 만화가와 영화감독 정
지영씨, 국립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심광현 교수 등이 회견장에 참석했다. 문화계 전
체와 사법부의 대립으로 비칠 정도다.

마침 영화 '거짓말'의 음란성 여부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지 얼마
안된데다, 미성년자보호법을 이어받은 청소년보호법 자체에 대해 반민주적 위헌법률
이라는 주장이 문화계에서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 정반대되는 판결
이 나온 만큼, 문화계의 반발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로 "음란물 여부는 보통사람의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거나 "부모의 처지에서
자식에게 보여줄 수 있을지 생각한 결과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재판부의 언급은,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가부장적 권위주의나 가치 획일주의 등 미시적인 문
제를 지목하면서 그 수단으로 성표현을 중시해온 최근 수년간 문화계의 흐름과 거
리가 한참 멀어 보인다.

이날 회견을 연 단체들은 재판부의 원칙과 기준의 모호성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물론, 문제가 된 '천국의 신화' 소년판이 간행물윤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납본필' 판정까지 받았음을 강조했다. ■

□ <세계일보> / 2000년 7월 27일자

Live Poll '천국의 신화' 유죄판결 반대 65.3%

표현의 자유 침해인가, 아니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결정인가.

법원이 최근 이현세씨의 장편만화 '천국의 신화'에 대해 "모든 것을 떠나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집단성교나 수간(獸姦) 장면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음란
물로 규정, 유죄판결을 내린 데 대해 만화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음란물로 고발된 영화 '거짓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과
는 의견상 상반된 것이어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세계일보 인터넷신문인 사이버세계와 LG텔레콤이 공동으로 24일 오후
3시부터 25일밤 12시까지 이지채널 방송이용자 2501명을 대상으로 '천국의 신화' 유
죄판결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5.3%는 "유죄판결에 반대한다"고 대답했으며 20.5%는 "찬성한
다", 14.2%는 "모르겠다"고 각각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경향신문> / 2000년 7월 25일자 / 박인하(만화평론가)

발언대 - '천국의 신화' 유죄판결과 21세기 문화강국의 꿈

몇 번씩 재판이 연기되며 3년 동안 지루한 시간이 흐른 뒤 법원은 '천국의 신화'
에 유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문화적 표현물에 대한 법적 규제 의지를
를 천명했다.

앞으로 우리나라 창작자들은 일반인들의 정서에 근거해 작품의 음란성을 판단하
겠다는 재판부의 의지에 따라 창작의 자유를, 무한한 상상력의 세계를, 빛나는 창의
력을 유보시킨 뒤 표현의 수위를 조절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정부가 천명한 21세기

문화 강국의 시대는 허무하기 그지없는 한낮의 꿈이 되어버렸고 정부가 스스로 밝힌 경쟁력 있는 뉴미디어 콘텐츠인 만화 육성 계획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천국의 신화'는 고대 신화를 재해석한 만화다. 먼저 성인용으로 제작된 후 청소년용으로 재편집해 출판되었다.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1998년 '천국의 신화'가 문제되었을 당시 각종 매체에 보도된 그림은 모두 '성인용'에만 존재하는 것이었다. 이번 판결은 '청소년용'으로 이루어졌고 그 그림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재판부가 지적한 집단성교나 수간 장면 등의 직접적인 묘사는 청소년용에서 모두 삭제되었다. 수간 장면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인간이 되고 싶은 늑대가 여인과 어울리는 장면이 유일하다. 이 장면은 구체적인 성교 장면이 아니라 마치 신화의 한 장면과 같은 환상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장면을 보고 포르노그래피의 노골적인 수간을 상상했다면 나는 그 상상력의 음란함을 고발하고 싶다.

판결문에서는 인간과 짐승이 벌이는 전투 장면의 잔인성도 함께 지적되었다. 상고시대에 목숨을 걸고 짐승과 벌이는 사투가 잔인하지 않다면 오히려 더 비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재판부의 논리는 빈약하고 앙상하며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든다.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의 잘못된 행동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유죄를 선고"했으면 그 뚜렷하고 선명한 근거가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단지 '일반인들의 정서를 판단기준으로 내세웠다. 도대체 음란하지 않은 장면을 음란하게 편집해 음란하다고 상상한 자신들의 사고방식을 일반인들의 정서라고 강변하는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술한 논란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영화 '거짓말'과 이번 '천국의 신화'의 상이한 판결은 결국 만화와 영화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여겨진다. 이번 판결은 한국 만화의 위상과 위치를 가혹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이제 한국 만화는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함께 등급을 구분하는 틀에 대해 고민하고 만화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확장시켜야 하는 근본적인 치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 <중앙일보> / 2000년 7월 20일자 / 정준영(동덕여대 사회학과 교수)

[시론] '거짓말'과 '천국의 신화'

"영화나 소설은 돼도 만화는 안된다 말인가?" 몇년 전 만화가 이현세씨의 구속을 접하고 만화계 인사들이 자조적으로 내뱉은 한탄이었다.

아직까지 만화를 저급한 장르로 보는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저께 이런 그들의 우려가 드디어 적중한 것처럼 보인다.

영화 '거짓말'의 음란성 여부에 대한 무혐의 판정의 기억이 생생한데 불과 3주도 채 되지 않아 만화 '천국의 신화'가 법원에서 음란물 판정을 받고 이현세씨는 미성년자 보호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거짓말'이 '설사 음란성이 있다 하더라도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관대한 처분을 받은 반면, '천국의 신화'는 청소년판을 만들면서 문제 장면을 수정하는 등 노력을 다했음에도 유죄 판결을 벗어나지 못했다.

과연 사법당국은 만화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일까? 한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있다. 영화 '거짓말'은 성인용이었지만 만화 '천국의 신화'는 청소년용이었다는 점 말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성인과 청소년을 다르게 대접한다.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존재이고 사리분별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존재이므로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음란물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것뿐 아니라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을 제한하고 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등이 모두 이런 보호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대신 청소년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대개 성인에 의해 관대한 처분을 받는다.

청소년이 과연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논란이 없지 않다. 또 음란물이 청소년에게 실제로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상반되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청소년을 몇살까지로 보느냐를 둘러싸고 자주 논란이 빚어지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 청소년의 범위도 모호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청소년이 근대 이후에 생긴 사회적 범주라는 점도 이런 논란을 부추긴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 대한 보호 주장이 공감을 얻는 이유는 인간을 두고서는 실험을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음란물이 실제로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확신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나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접근을 금지하는 편이 안전하다는 것이다. 인간을 대상으로 할 때는 만에 하나의 가능성에도 조심해야 한다는 주장에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범주의 자의성을 주장하는 논리는 설득력을 잃고 만다.

청소년이 들을 수 있는 시간에 음란한 농담을 방송한 라디오 방송국에 유죄를 선고한 미국 법원의 1978년 판례나, 텔레비전에 음란물에 대한 접근 차단 장치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미국 정부의 노력은 1%의 위험도 감수하지 않겠다는 이런 정신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생점은 영화와 만화가 아니라 성인과 청소년이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에게 보여 주지 말아야 할 음란물이란 어떤 것일까? 그동안 수차례 비슷한 논란이 반복된 바 있지만 문제는 여전히 음란물의 판정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천국의 신화'에 대한 이번 판결에서 재판관은 "법적인 판단 이전에 부모의 입장에서 만화를 봤을 때 자식들에게 보여줘도 괜찮은 것인가를 판단,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이는 외설물의 판정 기준과 관련해 유명한 73년 미국 대법원의 판례에서 '보통 사람들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은 것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우리 법정에서는 음란물에 대한 판정을 할 때 법관이나 검사의 개인적 판단에 여전히 많은 부분을 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자의성은 '신체 특정부위에 대한 관객의 몰입을 막으려는 영화 촬영 기법' 등을 이유로 '거짓말'이 음란물이 아니라고 판정한 검사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결국 음란성 여부를 판단할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정립되지 않는 한 사법당국의 판결을 둘러싸고 자의적이며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관이나 검사가 더 이상 한 부모의 개인적 입장에 얹매이지 않을 날은 과연 언제일까? ■

□ <문화일보> / 2000년 9월 1일자 / 오애리 기자

영화진흥법 개정안 또 표류하는가

문화관광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영화진흥법' 개정안이 영화계의 반대에 부닥쳐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11일 개정안 입법예고 당시 '영화계 발전을 위한 진일보'로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영화진흥위원회와 문화관광부 주최로 열린 '영화진흥법 개정공청회'에 참석한 영화계 인사들은 "문화부가 이번 개정안에서 등급보류조항을 없앤다고 해놓고 또다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부여 거부권한을 부여한 것은 명백한 퇴보다" "제한상영관에 관한 규정이 너무 애매모호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청회에서 일부 원로급 영화감독, 극장업자들은 "거짓말 '감각의 제국' 등이 극장 개봉하는 세상인데 현재 심의규정에 도대체 무슨 불만이 있는가" "극장을 살리기 위한 스크린쿼터제 개선이 더 시급하다" "수십년 넘게 우리 영화계를 지켜온 원로영화인들이 외부압력의 의해 쫓겨나가고 있다"며 이날 핵심의제 및 영화계 전반의 문제의식과는 사뭇 동떨어진 주장을 펴고 고함치는 소란을 빚어 최근 영진위 구성을 둘러싼 영화계 신구세력간의 골깊은 갈등을 다시 한 번 드러내기도 했다. 영화진흥법 개정을 둘러싼 핵심논점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간략하게 정리해본다.

◆등급분류보류 지난달 11일 문화부는 영화진흥법 개정안 입법고시 후 창작과 표현의 자유신장 및 규제완화에 대한 영화계의 요구가 증폭됨에 따라 "등급분류보류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막상 공개된 개정안 조항은 이런 주장과 거리가 있다. 기존의 '민주적 기본질서, 미풍양속에 저촉되는 영화의 경우 내용검토 등을 위해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상영등급의 분류를 보류할 수 있다'(4장 21조 4항)는 조항을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당해 영화가 다른 법령에 저촉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영등급을 분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표현만 살짝 바꾼 것이다.

조광희 변호사는 "최근 서울지방법원이 영화 '둘 하나 섹스'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의 등급보류에 대한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새 영화법이 곧 위헌판결이 날 등급보류 조항을 존속시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변재란(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영화평론가)씨도 "등급보류 영화에 대한 규정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측은 '점진적인 개선'과 '청소년 보호법, 음란법 등 다른 법률과 일선행정기관 간의 혼란 방지' 등 현실론을 내세우고 있다.

◆ 제한상영관

개정안에 따르면 제한상영영화는 '성과 폭력 등의 묘사가 청소년에 유해한 수준의 영화'로 규정된다. 제한상영관은 연간 상영일수 전부를 제한 상영등급에 해당하는 영화만 상영해야하며,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출입할 수 없고 옥외광고, 비디오 출시도 금지된다. 실질적으로 현행 18세 관람가 등급 위에 20세 관람가 등급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이다.

정지영 영화인회의 이사장은 "청소년에 위해한 영화는 이미 기존 18세 관람불가 등급범주에 들어간다. 따라서 개정안은 등급분류거부권한을 삭제하고 제한상영관을 18세 등급을 부여하기 어려운 영화상영관으로 바꿔야 한다. 포르노물이 문제라면 음란법 위반으로 사법부가 고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제한상영등급 영화 및 전용관에 대한 개념이 애매모호한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거짓말' 같은 영화를 제한 상영관으로 보낼 경우 광고 및 비디오 출시도 엄격히 금지되기 때문에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도 있다. 전용관을 설치할 경우 과연 상업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물량을 채울 수 있는지도 미지수다.

권장희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총무간사는 "준포르노물의 범람이 우려되므로 굳이 제한상영관을 신설하지 말고 해당영화에 대한 제한상영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혜준 영진위 정책연구실장은 "18세 관람가 등급으로 일반상영관에 개봉한 후 디렉터스 컷으로 제한상영관에 거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

□ <대한매일> / 2000년 8월 26일자 / 이상록 기자

법원 "영화 등급보류 판정 위헌 소지"

법원이 사전검열 부활의 근거로 논란을 빚어온 영화진흥법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

을 제청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趙炳顯)는 25일 영화 '둘 하나 섹스'의 제작사인 인디 스토리 대표 곽용숙씨가 낸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영상을 등급위원회가 상영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한 영화진흥법 21조 4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진법의 등급분류 보류조항은 상영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영화상영을 금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면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등급 분류제를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등급위가 추상적 수준에서 음란성을 판단한 뒤 등급분류를 미뤄 상영을 막는 것은 성인의 복 권리와 영화인의 창작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곽씨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 '둘 하나 섹스'에 대해 두 차례등급 보류 판정을 하자 등급 보류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

□ <국민일보> / 2000년 8월 29일자 / 정재호 기자

정통부, 인터넷등급제 후퇴

정보통신부는 28일 일부 네이버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인터넷 등급제의 일부 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 일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키로 했다.

정통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중인 정보내용 등급 자율표시제(인터넷등급제)와 관련, '청소년 유해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에서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로 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등급표시 대상을 폭력 및 음란물로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대통령령에 따라 등급기준을 마련, 공표토록 한 조항(30조)에 대해서도 정보통신윤리위가 청소년보호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등급기준을 마련해 공표토록 수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보제공자에 불법정보처리 담당자를 지정토록 한 조항(37조), 불량정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업자간에 공유해 정보통신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39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접속기록을 일정기관 보관해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접속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48조 및 52조) 등을 삭제키로 했다.

이에 대해 등급제 도입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김진균 서울대교수)는 "정통부 수정안은 본질과 관계없는 것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네티즌들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사이버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 홈페이지는 네티즌들이 자유게시판에 '검열반대'라는 말머리를 단 항의글을 집중적으로 올려 지난 26일에 이어 이날도 하루종일 접속이 마비됐다. 특히 일부 네티즌은 정통부 홈페이지 접속이 어렵게 되자 청와대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인 '열린마당'과 국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항의글을 올리며 사이버 시위를 강행했다. ■

■ 성명서 모음 ■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사법부의 무원칙적이고 반문화적인 판결에 반대한다 !!

지난 7월 12일 사법부(서울지법 형사 단독 1부 김종필 판사)는 만화가 이현세 작 <천국의 신화>를 미성년자보호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사법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몇 년 사이 문화계에 생점이 되었던 문화적 표현물에 대한 법적 규제의 강화 논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만화계를 포함한 22개 문화예술단체들은 대중예술가의 창작의 권리와 독자들의 볼권리를 보수주의적인 법논리로 훼손시킨 사법부의 결정에 심한 분노감을 표명하며, 이번 판결로 인하여 한국 만화작가와 만화산업계가 다시 한번 심한 좌절감과 원치않은 불명예, 시장의 위축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국의 대표적인 만화작가이자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아왔던 이현세의 작품 <천국의 신화>가 청소년 음란물로 판정받게 된 이 불행한 사태는 비단 개인 작가의 불행이 아닌 문화계 전체, 아니 한국 문화예술계 전체의 불행이다. 21세기 문화강국을 선언하고 나선 국민의 정부 시대에, 개인의 문화적 표현과 수용의 기회가 더 많이 보장되고 배려되어야 할 문화의 시대에, 작품의 전체 맥락과 강한 상징성을 외면한 채, 일부 성적 표현의 장면을 문제삼아 음란물로 규정한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문화적 표현의 '해석력'과 '수용력'에 있어 대단히 보수적이고 편협하고 자의적임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역사적 사실과 사회적 의미들을 표현가능한 수많은 상상력을 통해 창작할 수 있다는 기본 원칙마저도 합의되지 못하는 우리 사회가 과연 21세기 문화산업의 강국이 될만한 기본 자질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의 문화적 표현물이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드러내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을 때에는 그것이 설령 사회의 보편적 정서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성적 표현일지라도 보호되고 재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집단성교장면이나 수간장면 등에 나타난 ‘음란성’과 인간과 짐승이 벌이는 전투장면에서의 ‘잔인성’ 등을 놓고 볼 때, 청소년에게 배포할 수 없는 음란물로 보인다”고 결론지은 재판부의 판결문은 <천국의 신화>의 실험적 표현이 드러내고자 하는 신화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런 참고와 해석을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천국의 신화> 소년판에서 재판부가 언급한 ‘집단성교’, ‘수간’, ‘인간과 짐승 사이의 잔인한 전투장면’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성인판과는 다르게 대부분 삭제되었고, 직접 심사대상 기관인 <간행물윤리위원회>도 적절한 심사 후에 ‘납본필’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소년에게 유해할 것이라는 막연하고도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천국의 신화>를 음란물로 규정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반문화적인 ‘소급적용’에 불과하다. 더더욱 문제는 재판부가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작품 전체 중에 극히 일부에 해당되며, 작품의 전체 구성에 있어 신화적인 표현이 불가피될 수밖에 없었음을 재판부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올 초 영화 <거짓말>의 음란물 시비로 문화예술계가 한 차례 홍역을 앓은 것을 기억하고 있다. 당초 영화 <거짓말>이 개봉관에 상영되었을 때, 일반 영화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고 윤리관과 가치관에 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보수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결국 형사고발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낳고 말았다. 그러나 영화가 상영된 후에 일반관객들의 문화적 수용력에 대한 보수계의 우려는 말 그대로 우려로 끝났고, 최근 사법부로부터 <거짓말>은 음란물이 아니라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문화적 표현물의 과급효과가 훨씬 큰 영화 <거짓말>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마당에, 얼마 되지도 않아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가 음란물로 규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날뿐더러 문화적 표현물에 대한 사법부의 원칙이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우리는 이번 사태로 일본문화의 전면 개방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한국 만화산업계와 대중문화산업 전체가 문화의 세기에 위배되는 부문별한 문화검열의 논리에 또다시 희생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한국의 대표적인 만화작가의 작품이 사법

부에 음란물로 판정되면서 만화창작자들의 창작력이 위축될뿐아니라 만화시장 자체의 자생력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에 가해진 사법부의 부당하고도 반문화적인 결정에 반대하며 이번 사법적 조치가 철회되고 이 작품이 멋있하게 명예가 회복될 때까지 아래의 활동방향 따라 연대할 것이며 문화의 표현의 자유를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다.

● 우리는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가 무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대응할 것이며 이를 위해 문화예술계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의 법적 대응을 위해 자문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법률적인 검토 후에 음란물 판결에 대한 즉각적인 무효소송을 벌여나갈 것이다.

● 한국만화계의 창작의 자유를 탄압하는 사법부에 항의하기 위해 한국 만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여 빠른 시일 내에 대중적인 항의 집회를 개최할 것이다.

● 우리는 문화예술계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동대책위를 구성한 후에 적절한 시일 안에 대중문화의 표현의 자유와 만화창작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시민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다.

2000. 7. 20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한국만화탄압 비상대책위원회 한국만화가협회, (사)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사)우리만화발전을 위한 연대모임, (사)한국애니메이션예술인협회, 전국시사만화작가회, 한국시사만화가회, 여성만화협의회, 젊은만화작가회, 한국만화출판협회, 서울카툰회, ACA(전국아마추어만화연합회), 전국만화학원연합회,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영화인회의, (사)스크린쿼터문화연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여성영화인모임, (사)한국독립영화협회, 독립예술제사무국, 한국대중음악작가연대,

이현세作 '천국의 신화' 음란판결에 대한,
한국만화탄압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

이번에 빚어진 '천국의 신화'에 관한 판결에 대해 우리 만화인들은 작가 이현세 개인을 넘어 만화계 전체의 상징적 사안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감시와 검열 속에 우리들의 가치를 지키며 한국의 만화를 일구어 왔고, 한국만화의 토양을 지켜 왔다. 사법부의 근시안적인 판결에 대해 비애와 굴욕감을 느끼면서 한국만화인들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대중문화의 표현자유에 대한 관대한 해석이 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유독 '만화만의 유죄판결'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다. 이는 만화라는 매체를 경시하는 것이라고 본다.

2. '천국의 신화'에 집단강간, 수간 등을 문제 삼았던, 판결대상이 된 청소년 용에는 그 장면들이 모두 삭제되었고,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도 아무 문제없이 바로 '납본필' 되었다. 그럼에도 유죄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유죄를 만들기 위한 유죄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3. 판결문중, <음란성과 폭력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작가와 같은 전문가들의 기준이 아닌 일반인들의 정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 판결대로라면, 재판조차 검사나 판사와 같은 전문가가 필요 없다는 것인가? 또한 일반인의 기준이라 하였으나 과연 어느 일반인의 시각이 기준이 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사법부는 자신들의 판단을 일반인의 시각이 라고 덧씌워 한국만화를 마녀사냥 하려는 의도라 볼 수 밖에 없다. 사법부는 일반인들의 의견을 우리와 함께 들어볼 의향이 있는가...?

4.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만화가로서 작품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을 감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일반작가는 그려도 되고, 대표작가는 그려선 안된다는 것인가?! 이 판결은 공정성, 객관성, 보편타당성을 잃은 판결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5. 이번 판결과 같은 잣대라면 현재 발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만화는 유죄판결 받을 수 밖에 없다. 문화의 세기를 맞아 우리만화의 국제경쟁력이 절실히 필요로 한 시기에 사법부의 이러한 판결은 우리만화의 경쟁력을 말살시키는 행위이다. 또한,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는 문화정책의 원칙에도 역행하는 판결이라 본다.

6. 우리는 이 판결이야말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라고 생각하기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한국만화탄압 비상대책위원회

**청소년보호법의 폐지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위상 전환을 촉구하며
청소년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제안한다!**

지난 몇 년 사이에 터져나온 청소년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다. 교실붕괴, 학교폭력, 왕따현상, 원조교제, 10대 매매춘, 인천호프집사건, 부친살해 등 이러한 일련의 청소년 사회 일탈행위들은 비단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구조적인 모순들과 연관되는 사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심각한 청소년 일탈과 비행현상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97년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만들었고, 99년 7월 법개정을 통해 청소년보호 정책을 강화시켰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단계적으로 건립하고 청소년문화축제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증진시키는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청소년 문제는 이제 국가가 해결해야 할 주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그 방향도 '규제'와 '육성'이라는 이중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문화연대)는 정부가 청소년을 보호하고 그들의 문화를 육성하겠다는 정책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청소년들을 등등한 시민주체로 바라보는 시각에는 아직까지도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는 우려를 보낸다. 국가의 청소년보호정책은 아직까지도 청소년을 미성숙한 주체로 단정하면서 그들의 인권, 복지, 문화참여권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의 집> 건립이나 청소년문화축제도 청소년들의 기본 문화환경과 교육조건을 개선하지 않은 채 청소년들의 사회적 불만을 해소시키거나 겉으로 드러나는 실적위주·행사치례의 협소한 의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역할은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개방적인 사고나 그에 따른 혁신적인 의제들없이 단순히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유해매체 규제기능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도 진정으로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할 인권과 복지 교육에 대한 대안은 하나도 없이 청소년을 부정적인 대상으로 일별하여 무리한 법적용을 강화시키고 있다. 문제는 청소년들의 사회문제들을 부정적인 방향이 아닌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청소년보호법으로는 그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수 없다는

점이다. 최근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행정부서 위치와 그 기능에 대한 논란이 있기도 하고, 청소년보호법의 무리한 법적용이 문제가되고 있는 바, 이에 문화연대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청소년보호법과 관련하여 청소년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한 대안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1)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보호를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해야 하며, 그런 점에서 청소년보호법은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진흥법'으로 명칭부터 전환되어야 한다.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들이 자기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항들, 요컨대 성폭력과 인신매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제외하고는 청소년들의 인권과 복지권 문화권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 2) 그런 점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도 '청소년육성위원회', 혹은 '청소년교육문화진흥위원회'로 그 위상이 전환되어야 한다. 현재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을 성년과 구별짓고, 청소년을 미성숙한 주체로 단정하여 그들의 행동과 사고를 제한하겠다는 가부장적이고 보수주의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한 사고관을 가지고 과연 21세기 청소년들의 다양한 삶의 가치와 미래를 제대로 포괄할 수 있겠는가? 21세기에 걸맞는 청소년육성정책을 위해서는 현재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역할은 최소화해야 하며, 교육, 문화, 인권, 복지 관련 전문가들 다수 참여하는 청소년육성 정책과 제도적 장치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시점이다. 특히 청소년육성위원회나 청소년교육문화진흥 위원회가 어느 상위 부서에 들어가더라도 방송위원회처럼 민간전문인이 운영할 수 있는 합의제 행정기구가 되어야 한다.
- 3) 청소년보호법의 해체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위상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반윤리적인 일탈행위를 방임하려는 것과는 그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문제는 청소년들의 일탈행위와 그들을 조장하는 일부 기성세대의 반윤리성과 상업성에 대한 대안은 법적인 대응보다는 청소년 교육·문화환경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그에 따른 획기적인 정책의 수립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청소년의 교육과 문화 인권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획기적이고

개방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문화연대는 다른 시민단체들과 청소년단체들과 연대하여 국가의 청소년정책의 새로운 전환을 촉구하는 심포지움, 공청회, 서명 운동, 국정감사활동, 청원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다.

2000. 6. 27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